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법학석사 학위논문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적 성격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

202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금융규제법)

홍 효 욱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적 성격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정 순 섭

이 논문을 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금융규제법)
홍 효 옥

홍효옥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적 성격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청산의 정의, 등장배경, 유형, 처리절차, 효과 및 결제리스크 관리수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급결제에서 청산은 지급지시에 따른 거래가 처리되도록 금융회사 간 지급지시 정보를 중계하고 거래를 대사 및 확인하며 채권 및 채무금액에 대한 차감을 통해 최종 결제금액 및 포지션을 산출하는 절차로 정의될 수 있다. 청산은 금융회사 간 다수의 채권 및 채무를 차감 및 정산하여 차액만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결제 횟수 및 금융회사가 결제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금의 규모를 대폭 감소시켜 결제 효율성 향상 및 유동성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금융회사 간 최종적인 채권 및 채무관계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청산의 방식은 청산 대상기관의 수에 따라 다자간 청산(multilateral clearing)과 양자간 청산(bilateral clearing)으로, 청산기관이 청산 대상거래의 중간에서 당사자로 개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리인 청산(agency clearing)과 CCP 청산(central counterparty clearing)으로 구분된다. 대리인 청산에서 청산기관은 지급지시 정보를 중계하고 결제금액을 산출할 뿐 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반면 CCP 청산에서의 청산기관은 스스로 거래의 당사자로서 금융회사 간 거래관계에 개입함으로써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게 된다.

청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된 리스크로는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가 있다. 이에 대한 관리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참가기

관의 신용한도 설정, 사전 담보제, 손실 공동 분담제, 차액결제 참가자격 제한, 중앙은행의 일중 유동성 공급, 차액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등이 있다.

국내 및 해외의 지급결제 청산업무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본에서는 CCP 청산 방식으로,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에서는 대리인 청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지급결제 청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국내에서는 청산업무의 전반에 관하여는 법률이 아닌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금융결제원의 업무별 규약에서 주로 정하고 있다. 2020년 11월 27일과 2021년 11월 4일에 각각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청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특칙을 두어 청산을 포함한 지급결제의 전 과정이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금융회사의 회생 또는 파산의 상황에서 무효화되지 않도록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은행법에서는 청산기관을 포함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에서 청산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써 규율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다. 규정내용은 청산, 청산기관 및 청산시스템에 대한 정의, 청산기관의 의무, 청산업무의 운영, 청산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규정항목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급결제에서 청산 및 결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파급효과 및 그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청산의 민법상 상

계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민법상 상계의 요건은 채권의 동종성, 채권의 상호대립성, 채권의 이행기 도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성질의 채권이 아닐 것으로 정리된다. 이 중 채권의 상호대립성 요건 충족 여부가 주로 문제 되는데 다자간 대리인 청산은 각 거래별 양 당사자 간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당사자 간 상계의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민법상 채권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결여되어 민법상 상계에 해당할 수 없게 된다. 양자간 청산과 다자간 CCP 청산의 경우 채권의 상호대립성이 인정되며 장래의 시점인 결제일에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므로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상계하도록 하는 민법상 상계의 예약에 해당한다.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제화 필요성은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금융법적 의의의 측면, 청산의 독립적 기능의 측면, 지급결제의 결제완결성 보장의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지급결제에서 청산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하나 청산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결제리스크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수반하기 때문에 청산에 관하여 법제화하는 것은 금융법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지급결제에서 청산은 금융회사 간 채권 및 채무관계를 확정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법제화를 통해 청산의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청산업무의 전문적, 안정적 수행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이유는 결제완결성 보장의 측면에서 도출된다. 다자간 대리인 청산의 경우 민법상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특칙에서는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특칙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상계에 관한 조항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되어 상계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다자간 대리인 청산의 구조 자체가 무효화되고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는 법적 위험이 존재하므로 청산에 관한 법제화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청산에 독립적 기능을 부여하고 청산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민법상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결제완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부분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지급결제에서의 청산도 자본시장에서의 청산과 마찬가지로 대리인 방식이 아닌 CCP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모든 청산대상 거래를 상호화함으로써 민법상 상계의 채권의 상호대립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산 구조의 유효성을 보장하고 법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급결제에서 청산은 지급결제의 전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 청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청산에 참가하는 금융회사 일방의 결제 불이행이 다른 금융회사 및 전체 금융시스템에 연쇄적으로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결제리스크 관리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청산의 법적 유효성 및 청산을 포함한 지급결제 전 과정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산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요어 : 지급결제, 청산, 대리인 청산, CCP 청산, 상계, 결제완결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학 번 : 2022-24560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2
I. 연구의 목적	2
II. 연구의 범위	3
III. 연구의 방법	3
제 3 절 연구의 내용	4
 제 2 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개요	6
제 1 절 지급결제 과정 내 청산	6
제 2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정의	7
제 3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등장배경	8
제 4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유형	9
I. 양자간 청산과 다자간 청산	9
II. 대리인 청산과 CCP 청산	10
제 5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처리절차	11
제 6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효과	12
제 7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따른 결제리스크 관리	14
제 8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업무 처리 현황	16
I. 국내의 청산업무 처리 현황	16
1. 업무 수행주체	16
2. 업무 처리절차	18
3. 결제리스크 관리	18
4. 법적 구조	20

II. 해외의 청산업무 처리 현황	21
1. 일본의 청산업무 처리현황	21
2. 캐나다의 청산업무 처리현황	23
3. 미국의 청산업무 처리현황	24
4. 호주의 청산업무 처리현황	26
5. 영국의 청산업무 처리현황	27

제 3 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적 규율 현황 .. 29

제 1 절 국내의 법적 규율 현황	29
I. 개관	29
II. 한국은행법	30
III.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31
1. 법적 성격	31
2. 주요 내용	31
3. 세부 내용	32
IV.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	39
1. 법적 성격	39
2. 주요 내용	40
3. 세부 내용	40
V.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3
VI.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4
1. 주요 내용	44
2. 세부 내용	46
3. 개정 추진과정에서의 논의내용	5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55
VII. 소결	57
제 2 절 해외의 법적 규율 현황	59
I. 개관	59
II.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法)	60

1. 주요 내용	60
2. 세부 내용	61
III. 캐나다의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 ·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65
1. 주요 내용	65
2.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의 세부 내용	66
3.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의 세부 내용	70
IV. 미국의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 연방예금보험공사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73
1. 주요 내용	73
2.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의 세부 내용	73
3. 연방예금보험공사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의 세부 내용	78
V.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Payment Systems(Regulation) Act 1998) · 지급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법(Payment Systems and Netting Act 1998)	79
1. 주요 내용	79
2.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의 세부 내용	79
3. 지급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법(Payment Systems and Netting Act 1998)의 세부 내용	80
VI. 영국의 은행법(Banking Act 2009) · 결제완결성 보장규정(The 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Settlement Final	

ity) Regulations 1999)	82
1. 주요 내용	82
2. 은행법(Banking Act 2009)의 세부 내용	82
3. 결제완결성 규정(The 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Settlement Finality) Regulations 1999)의 세부 내용 ..	83
VII. 소결	84
제 4 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적 성격	87
제 1 절 문제의 소재	87
제 2 절 민법상 상계의 개관	88
I. 민법상 상계의 의의	88
II. 민법상 상계의 요건	88
1. 민법 제492조	88
2. 채권의 동종성	89
3. 채권의 상호대립성	89
4. 채권의 이행기 도래	91
5.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성질의 채권이 아닐 것	91
III. 민법상 상계의 효과	92
제 3 절 지급결제에서의 청산의 민법상 상계 해당 여부 ..	92
I. 채권의 동종성	92
II. 채권의 상호대립성	92
1. 양자간 청산의 경우	92
2. 다자간 대리인 청산의 경우	93
3. 다자간 CCP 청산의 경우	107
III. 채권의 이행기 도래	107
IV. 소결	108
제 5 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	109
제 1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 필요성	109

I.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금융법적 의의의 측면	109
II.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독립적 기능의 측면	110
III. 지급결제의 결제완결성 보장의 측면	112
제 2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 방안	113
I. 법제화 필요사항	113
II. 청산의 법적 정의 및 청산기관의 법적 지위	114
III. 결제완결성 보장	115
 제 6 장 결론	 117
 참고문헌	 121
Abstract	125

그 립 목 차

[그림 1-1] 다자간 청산에 따른 결제자금 규모 및 결제 횟수 절감 예시	13
--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지급결제란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 및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¹⁾ 물품을 구매하고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 식사 후 식사비용 정산을 위해 개인 간 계좌이체를 하는 행위, 기업에서 매달 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모두가 지급결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급결제는 일상적인 경제생활 및 경제생활이 이루어지는 토대인 금융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급결제의 과정에 있어 청산은 금융시스템의 이면에서 비현금 지급수단을 통한 지급거래 발생 시 금융회사 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산은 금융회사 간 자금을 개별적으로 직접 주고받는 대신 차감(netting)의 과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해야 할 금액의 차액만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한다.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결제규모는 2022년 한해 일평균 27.5조원으로 전년도보다 6.1%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²⁾

지급결제에서 청산이 금융시스템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영향력에 비해 그동안 국내에서 청산의 법적 성격이나 법제화에 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져 오지 않은 편이다. 2020년 11월 27일 및 2021년 11월 4일에 각각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³⁾에서 ‘전자지급거래

1)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2014, 5면

2) 한국은행, 「2022 지급결제보고서」, 2023.4, 42면

3) 2020.11.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청산업’ 및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에 있어서 청산 및 청산기관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제까지의 논의는 주로 청산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체계에 관한 것이었으며 청산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의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산의 법적 성격을 밝히고 법제화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은 금융거래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청산에 참가하는 금융회사의 파산은 다른 금융회사의 자금운용에 차질을 초래하며 이에 따른 결제불이행이 전체 금융회사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바,⁴⁾ 청산을 포함한 지급결제의 전 과정의 유효성 및 완결성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해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적 성격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I.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에서 청산의 법적 성격을 밝히고 청산에 관한 법제화 필요성 및 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급결제 청산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상계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이를 토대로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금융법적 의의의 측면, 청산의 독립적 기능의 측면, 지급결제의 결제완결성 보장의 측면에서 법제

5855) 및 2021.11.4.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3137)을 의미한다.

4) 금융결제원, 「지급결제 A to Z」, 2021.12, 95면

화 필요성을 도출해낸 후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국내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적 성격 및 법제화에 관한 것이다. 지급결제의 범위에 증권 및 파생상품의 청산 및 결제를 포함하는 견해도 있으나⁵⁾ 증권 및 파생상품의 청산 및 결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제화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금이체에 따른 청산만을 지급결제에서의 청산으로 보고 연구의 범위도 그로 한정한다.

청산의 방식은 청산 대상기관의 수에 따라 다자간 청산(multilateral clearing)과 양자간 청산(bilateral clearing)으로, 청산기관이 청산 대상거래의 중간에서 당사자로 개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리인 청산(agency clearing)과 CCP 청산(central counterparty clearing)으로 구분된다. 후술하겠지만 국내에서의 지급결제 청산의 경우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다자간 청산 및 대리인 청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도 다자간 대리인 청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I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먼저 국내·외 입법례를 살펴볼 것이다. 국내·외에서 지급결제 청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사례로는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2020년 11월 27일과 2021년 11월 4일에 각각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法), 캐나다의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5)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255-297면

Settlement Act 1996)과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미국의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과 연방예금보험공사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과 지급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법(Payment Systems and Netting Act 1998), 영국의 은행법(Banking Act 2009)과 결제완결성 보장규정(The 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Settlement Finality) Regulations 1999)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해외의 청산 관련 입법례를 분석하기에 앞서 해외의 청산업무 처리현황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파산 시 다자간 청산의 효력에 관하여 다루었던 영국의 1975년 *British Eagle International Airlines Ltd. v Compagnie Nationale Air France* [1975] 1 WLR 758 판례 연구를 기반으로 청산의 법적 성격을 밝히고 청산의 법제화 필요성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그 밖에 국내·외 지급결제 관련 문헌연구도 함께 수행한다.

제 3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본론은 ‘제2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개요, 제3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적 규율 현황, 제4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적 성격, 제5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은 결론이다.

‘제2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개요’에서는 지급결제에서 청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룰 예정이다. 청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급, 청산, 결제로 이루어지는 지급결제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청산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하고 청산의 유형, 처리절차, 효과 및 청산에 따른 결제리스크 관리수단 등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또한 국내·외에서 청산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제3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적 규율 현황’에서는 국내·외

에서 지급결제 청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다룬다. 다만, 국내에서는 청산 전반에 대하여 현행 법률로써 상세히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2020년 11월 27일과 2021년 11월 4일에 각각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청산 및 결제과정 전반을 다루고 있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금융결제원 업무규약상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결제완결성 보장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특칙과 한국은행법의 내용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자본시장에서의 청산에 관한 내용도 참고적으로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비교법적으로는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의 관련 법률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제4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적 성격’에서는 지급결제 청산의 민법상 상계 해당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다자간 청산에서는 다수 당사자 간 채권 및 채무의 차감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자간 대리인 청산의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CCP 청산에서와 달리 청산기관이 청산 대상거래의 중간에서 당사자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상계의 요건인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호대립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하여 이를 민법상 상계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관련하여 영국의 1975년 *British Eagle International Airlines Ltd. v Compagnie Nationale Air France* [1975] 1 WLR 758 판결을 분석하여 참고할 것이다.

‘제5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에서는 지급결제 청산을 법제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룬다. 법제화 필요성은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금융법적 의의의 측면,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독립적 기능의 측면, 지급결제의 결제완결성 보장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 및 그 방안을 도출해낼 것이다.

‘제6장 결론’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한다.

제 2 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개요

제 1 절 지급결제 과정 내 청산

지급결제의 과정은 지급수단의 유형에 따라 달리 진행된다. 지급수단은 현금과 어음, 수표, 카드, 계좌이체 등과 같은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현금을 이용한 지급의 경우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지급결제 과정이 종결되는 반면⁶⁾ 비현금 지급수단의 경우 지급 이후 청산, 결제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마무리된다. 즉, 비현금 지급수단을 이용한 지급결제 과정은 일반적으로 지급, 청산, 결제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지급은 지급결제의 시작점이 되는 단계로서⁷⁾ 지급인이 자신의 지급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취인 앞으로 지급지시를 송부하고 수취인이 그것을 수신하는 절차이다.⁸⁾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보았을 때에는 지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지급지시하는 것만으로 지급결제의 전체 과정이 종결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급지시에 의거하여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급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수취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로 전송하고, 거래를 확인한 후 금융회사 간 주고 받아야 하는 자금을 정산하여 실제 자금을 금융회사 간 이전하기 위한 청산이라는 절차가 숨어있다. 가령,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수취인의 계좌에 이체금액이 입금되었음이 표시되는 것만으로 절차

6) 현금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수단으로서 공신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으므로 청산 및 결제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과정이 마무리된다.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5면)

7) 中島真志=宿輪純一『決済システム のすべて』(東洋経済新報社, 第3版, 2022年) 10頁

8)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7면

가 종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급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와 수취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인의 금융회사로부터 수취인의 금융회사로 지급지시 정보를 전송하여 거래를 처리하고 이후 금융회사 간 자금을 정산 및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며⁹⁾ 이를 위해 청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결제에는 청산과정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여 완결시키는 과정으로 결제은행에 개설된 금융회사의 예금계좌 간 자금이체 등을 통하여 지급인의 금융회사에서 수취인의 금융회사로 실제로 자금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제 2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정의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는 청산(clearing)에 대하여 “결제에 앞서 지급지시를 전송(transmitting)하고 대사(reconciling) 및 확인(confirming)하는 과정”으로서 “거래에 따른 다수의 채권 및 채무를 차감(netting)하여 결제를 위한 최종 포지션(final position)을 확정하는 것을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¹¹⁾ 한국은행에서는 청산을 “청산기관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결제를 위해 교환된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할 차액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 계산이나 결제 전의 포지션 산출 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청산은 지급지시에 따른 거래가 처리되도록 금융회사 간

9) 지급인과 수취인의 금융회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처리하게 되며, 이를 청산의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한다. (BIS, “clearing and settlement arrangements for retail payments in selected countries”, September 2000, p.5)

10)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7면

11) BIS, “A glossary of terms used in payments and settlements systems”, March 2003, p.13

지급지시 정보를 중계하고 거래를 대사 및 확인하며 채권 및 채무 금액에 대한 차감을 통해 최종 결제금액 및 포지션을 산출하는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 3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등장배경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등장은 은행의 발전과정과 맞물려 있다. 13세기부터 17세기 초반까지의 초기 은행은 자행 내 자금이체와 지급수단만을 제공하였으나¹²⁾ 17세기 중반부터 상업 및 은행의 발달로 다수의 은행이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은행 간 자금결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¹³⁾ 이 과정에서 결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18세기 중반부터 청산을 담당하는 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¹⁴⁾ 청산기관은 그 설립시기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지역 내 은행들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설립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¹⁵⁾

오늘날 은행의 중요한 기능은 기업, 개인 등 고객 간, 최종적으로는 은행 간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며¹⁶⁾ 청산은 은행 간 자금의 이전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지급인의 거래은행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이 지급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은행의 내부 회계장부에 기입하면 충분하지만 지급인과 수취인이 서로 다른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금 이전방식이 복잡해지게 되는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산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¹⁷⁾

12) 현정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지급결제 조사자료 2008-1, 한국은행, 2008.2, 8면

13) 현정환, 앞의 자료, 9면

14) 현정환, 앞의 자료, 18면

15) 현정환, 앞의 자료, 19면

16) John Armour *et al.*, *Principles of Financial Regu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393

17) John Armour *et al.*, *op.cit.*, pp.393-394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인이 지급인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물리적으로 자금을 이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¹⁸⁾ 그러나 이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방법이므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은행 간 자금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¹⁹⁾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일차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 모든 은행이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를 통하여 은행 간 자금이전이 동일한 은행 간 내부 거래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²⁰⁾ 그러나 결제의 규모가 증가하면 매번 결제기관을 통하여 은행 간 거래의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오늘날에는 많은 경우에 은행 간 자금의 이전은 중앙은행 또는 사적인 결제기관으로 결제를 위해 거래정보를 발송하기 전에 자동화된 청산기관을 통하여 청산의 과정을 거친 후 이루어지고 있다.²¹⁾ 결제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법정 화폐를 결제 자산으로 하여 수행하고 있다.²²⁾

제 4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유형

I. 양자간 청산과 다자간 청산

청산은 청산에 참가하는 당사자의 수에 따라 양자간 청산(bilateral clearing)과 다자간 청산(multilateral clearing)으로 구분된다.²³⁾ 양자간 청산은 두 개의 금융회사 간 이루어지는 청산이며 다자간 청산은 다수의 금융회사 간 이루어지는 청산이다.

18) John Armour *et al.*, *op.cit.*, p.394

19) John Armour *et al.*, *op.cit.*, p.394

20) John Armour *et al.*, *op.cit.*, p.394

21) John Armour *et al.*, *op.cit.*, pp.394-395

22) John Armour *et al.*, *op.cit.*, p.394

23)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박영사, 2023.9.10, 653면

양자간 청산에서는 지급지시 정보를 양자간 직접 송·수신하여 금융회사가 스스로 청산을 수행하거나 제3의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선정하여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한다.²⁴⁾ 다자간 청산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지급지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중앙기관²⁵⁾인 청산기관에 거래를 집중하여 처리하게 된다.²⁶⁾

청산의 초기 방식은 양자간 청산이었으나 이후 양자간 청산에 따른 결제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자간 청산 방식으로 발전하였다.²⁷⁾ 양자간 청산은 대량의 지급지시 정보를 다수의 금융회사에 전송해야 할 경우에는 다수의 금융회사 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지급지시 정보를 처리하는 다자간 청산에 비하여 효율적이지 않다.²⁸⁾ 또한 다자간 청산은 다수의 채권 및 채무금액을 차감하여 한 번에 결제처리를 하게 되므로 결제 횟수 및 결제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대폭 감소시켜 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II. 대리인 청산과 CCP 청산

다자간 청산은 그 법적 구조에 따라 청산대리인에 의한 대리인 청산(*agency clearing*)과 CCP에 의한 CCP 청산(*central counterparty clearing*)으로 구분된다.²⁹⁾ CCP(*central counterparty*)란 중앙거래당사자로서 모든 거래에 있어 지급인에게는 수취인이, 수취인에게는 지급인이 되는 기관을 의미한다.³⁰⁾

대리인 청산에서 청산기관은 지급지시 정보를 중계하고 금융회사 간 다수의 채권 및 채무관계에 따른 결제금액을 산출할 뿐 거래의 당사자가

24) BIS, *supra* note 9, p.5

25) BIS, *supra* note 11, p.13

26) BIS, *supra* note 9, p.5

27) Robert C. Effors, “Current legal issues affecting central banks”, Volume IV, IMF, 3 April 1997, p.521

28) BIS, *supra* note 9, p.5

29)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654면

30) BIS, *supra* note 11, p.12

되지는 않는다. 반면, CCP 청산에서의 청산기관은 스스로 거래의 당사자로서 금융회사 간 거래관계에 개입함으로써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게 된다.³¹⁾

대리인 청산의 경우 청산기관은 각 금융회사의 결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금융회사의 결제 불이행이 다른 금융회사들의 연쇄적 결제 불이행으로 전이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반면,³²⁾ CCP 청산에서는 청산기관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됨에 따라 청산에 참가하는 금융회사가 결제 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청산기관만이 영향을 받게 되고 청산기관이 결제 이행을 보증함으로써 개별 금융회사의 결제 불이행이 시장 전체에 파급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³³⁾ 따라서 CCP 청산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³⁴⁾

제 5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처리절차

청산절차는 크게 금융회사 간 지급지시 정보의 중계와 결제금액의 산출로 나뉜다.³⁵⁾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급지시 정보 중계는 거래를 매칭 및 분류하고 지급지시 정보를 취합하여 송신하는 등의 절차로 구성되며, 결제금액 산출은 각 금융회사별로 다른 금융회사들에 대한 청구금액과 다른 금융회사들로부터의 청구금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차액으로 결제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³⁶⁾

지급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지급인의 지급지시 요청에 따라 지급

31) 김진식/정순섭, 앞의 책, 654면

32) 이지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규율 체계와 그 개선방안-소액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173면

33) 中島真志=宿輪純一・前掲注(6) 307頁

34) 이지은, 앞의 논문, 173면

35) BIS, *supra* note 9, p.4

36) BIS, *supra* note 9, p.4

인의 계좌에서 지급금액을 출금처리한 후 지급지시 정보를 청산기관으로 전송한다. 청산기관은 이를 수신한 후 수취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로 지급지시 정보를 전달하고 수취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수신한 지급지시 정보의 내용에 따라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처리한다.

이후 지급인 거래 금융회사로부터 수취인 거래 금융회사로의 자금 이전을 위해 청산기관은 거래내역을 집계하여 각 금융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의 합계와 수취해야 할 금액의 합계 간 차액을 계산하여 금융회사별 결제금액 및 포지션을 산출한다.³⁷⁾ 결제기관은 청산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기관에 개설된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결제 처리함으로써 자금을 실제로 이전하여³⁸⁾ 지급결제의 과정을 마무리한다.

제 6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효과

지급결제에서 청산은 정보기술적 측면에서 금융회사 간 지급지시 정보를 중계함으로써 지급인으로부터 수취인으로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후 거래내역을 대사하는 과정을 통해 각 거래의 처리결과 및 유효성을 확인하여 금융회사 간 청산대상이 되는 거래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청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다수의 채권 및 채무를 차감 및 정산함으로써 결제비용 및 결제자금의 유동성을 대폭 절감하여 금융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³⁹⁾ 금융회사 간 개별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은 다양한 거래비용이 발생시킨다.⁴⁰⁾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와의 지급 및 수취 자금 규모를 직접 계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건마다 자금을 정산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결제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⁴¹⁾ 반면, 청산을 거치게 될 경

37) 中島真志=宿輪純一・前掲注(6) 10頁

38) 中島真志=宿輪純一・前掲注(6) 10頁

39) 금융결제원, 앞의 책, 20면

40) 현정환, 앞의 자료, 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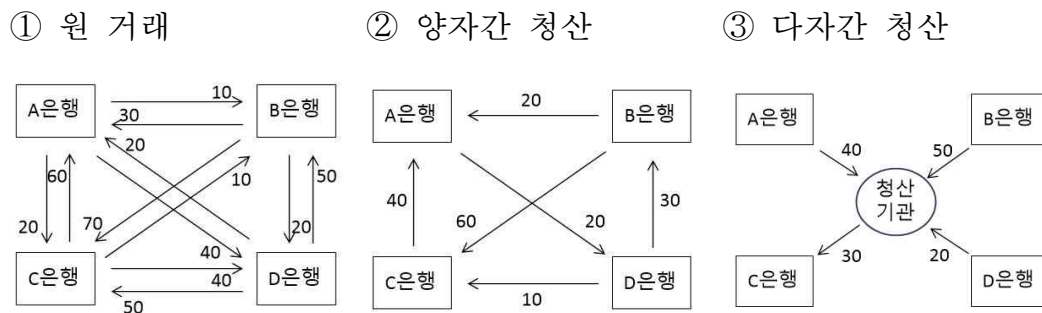
41) 현정환, 앞의 자료, 18면

우 금융회사 간 사전에 합의한 방식 및 일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절차가 통일되어 결제비용이 감소된다.⁴²⁾ 또한 지급금액에서 수취금액을 차감한 차액만을 결제하게 되므로 결제횟수를 감소시켜 결제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결제자금의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신용 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⁴³⁾

이러한 효과는 특히 다자간 청산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래 그림의 사례와 같이 4개의 금융회사 간 자금 이전이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각각의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총 420억원의 결제자금이 필요하고 12회의 결제가 일어나는 반면, 두 개의 금융회사씩 양자간 청산 방식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결제자금은 총 180억원, 결제 횟수는 6번으로 감소하게 된다.⁴⁴⁾ 다자간 청산 방식을 택할 경우 결제자금은 총 140억원, 결제 횟수는 금융회사별로 한번씩 총 4회만 일어나게 되어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비하여 결제자금의 규모와 결제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게 됨을 알 수 있다.⁴⁵⁾

[그림1-1] 다자간 청산에 따른 결제자금 규모 및 결제 횟수 절감 예시⁴⁶⁾

단위 : 억원



법적인 측면에서 청산은 금융회사 간 최종적인 채권 및 채무관계를

42) 현정환, 앞의 자료, 20면

43) 中島真志=宿輪純一・前掲注(6) 38頁

44) 금융결제원, 앞의 책, 21면

45) 금융결제원, 앞의 책, 21면

46) 금융결제원, 앞의 책, 20면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다수의 금융회사 사이에 복잡하게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를 청산의 과정을 통해 차감하여 단순화함으로써 최종적인 결제 의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⁴⁷⁾ 청산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채권 및 채무관계는 결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해소된다.

제 7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따른 결제리스크 관리

결제리스크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⁴⁸⁾ 특히 지급결제에서의 청산 및 결제업무는 청산의 과정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들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다른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취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차액으로 금융회사별 결제금액을 산출하고 해당 금액을 결제처리하는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일정기간 동안 일어난 거래를 취합하여 채권 및 채무를 차감한 차액을 거래가 종료된 이후 특정 시점에 한번에 결제처리를 함에 따라 거래가 일어난 시점과 최종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⁴⁹⁾ 각종 결제리스크에 노출된다.

청산 및 결제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결제리스크로는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가 있다.⁵⁰⁾ 신용리스크란 참가기관이 파산과 같은 사유로 인해 지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결제의무를 현재 및 미래의 어느 시점에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리스크이며,⁵¹⁾ 유동성리스크란 참가기관의 경영 자체는 건전하고 지급능력이 있으나⁵²⁾ 단기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정해진 결제시점에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⁵³⁾ 나아가 다자간 청산 방식에서는

47)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653면

48)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11면

49) 中島真志=宿輪純一・前掲注(6) 22頁

50) 한국거래소, 「KRX 청산결제의 이해」, 2021.12, 128면

51) 中島真志=宿輪純一・前掲注(6) 24頁

52) 中島真志=宿輪純一・前掲注(6) 25頁

구조상 하나의 금융회사의 결제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회사로 전이되어 연쇄적인 결제 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⁵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결제리스크 관리 제도들이 존재한다.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로는 일반적으로 참가기관의 신용한도 설정, 사전 담보제, 손실 공동 분담제 등이 있으며 차액결제 참가자격 제한, 중앙은행의 일중 유동성 공급, 차액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도 결제리스크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⁵⁵⁾ 신용한도의 설정은 참가기관의 자본금, 차입능력, 거래실적 등을 기초로 참가기관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만 자금이체 지시를 허용함으로써 미결제 채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다.⁵⁶⁾ 사전담보 제공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로 하여금 시스템 전체에 대한 순채무를 결제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담보를 처분하여 결제에 사용하는 방법이며, 손실 공동분담은 참가기관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미결제 채무를 나머지 참가기관들이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결제를 종료하도록 하는 제도이다.⁵⁷⁾

결제완결성이란 참가기관의 지급지시에 따라 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결제는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revocable)되거나 재지급(repaid)되지 않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규칙에 의거 무조건적(unconditional)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⁵⁸⁾ 국제결제은행은 금융시장 인프라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당국 및 금융시장 인프라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을 제정하였으며,⁵⁹⁾ 동 원

53)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13면

54)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13면

55)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227-228면

56)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228면

57)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228-229면

58) 박용우, “지급결제제도의 결제완결성”, 금융법연구 제3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06, 64-65면

59) 금융결제원, 앞의 책, 98면

칙은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되는데,⁶⁰⁾ 동 원칙의 8.에서는 금융시장인프라는 최종 결제시점까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결제완결성 보장을 권고한다.⁶¹⁾ 이를 위해 최종 결제시점을 규정화할 것과 최종 결제시점까지 결제를 완료할 것, 지급지시 및 결제가 취소될 수 없는 시점을 명확히 정의할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⁶²⁾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급결제와 관련된 각국의 법률이나 규정에서는 결제완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제 8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업무 처리 현황

I. 국내의 청산업무 처리 현황

1. 업무 수행주체

국내의 지급결제에서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한국은행과 은행법상 은행을 사원으로 하며⁶³⁾ 금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한다. 금융결제원의 정관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⁶⁴⁾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면서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거래에 대하여 거래 확인, 중계 및 결제금액 산출, 결제지시 등 청산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⁶⁵⁾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개

60) 금융결제원, 앞의 책, 98면

61) BIS,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April 2012, p.2

62) BIS, *Ibid.*, p.64

63) 금융결제원 정관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64) 금융결제원 정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다.

인이나 기업의 상거래 또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액 대량의 자금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⁶⁶⁾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어음교환시스템⁶⁷⁾, 지로시스템⁶⁸⁾, 금융공동망⁶⁹⁾ 등으로 구분된다.⁷⁰⁾

국내의 지급결제에서 결제기관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금융회사 간 거래의 자금이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소액결제시스템에서의 금융회사 간 채권 및 채무를 결제처리하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이라 한다)을 구축 및 운영한다⁷¹⁾.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회사의 당좌예금계좌의 입·출금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의해 수취 및 지급된 자금에 대한 차액결제를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인 결제를 처리한다.⁷²⁾ 또한 금융회사의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으로 결제불이행 상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다른 금융회사의 연쇄적 결제불이행 사태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금의 최종대부자로서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⁷³⁾

65)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2022, 8면

66) 금융결제원, 앞의 책(각주4), 140면

67)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각에 자기 은행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증서 포함) 중 다른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다른 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자기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결제원, 앞의 책(각주4), 155면)

68) 일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각종 결제대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주고받는 대신 금융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결제원, 앞의 책(각주4), 167면)

69) 금융회사가 자금이체 및 각종 조회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서로 연결한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금융결제원, 앞의 책(각주4), 144면)

70) 금융결제원, 앞의 책(각주4), 141면

71)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147면

72)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61면

73)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62면

2. 업무 처리절차⁷⁴⁾

국내 지급결제에서 청산 대상거래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한 금융회사 간 거래 및 그 거래에 따른 자금조정⁷⁵⁾이다.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인 거래 금융회사와 수취인 거래 금융회사 간에 지급지시 정보를 중계처리한다. 업무가 종료되면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별 거래내역을 각 금융회사로 전송하여 거래를 대사 및 확인하고 이를 집계하여 금융회사별로 다른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해야 하는 금액의 차액을 산출한 차액결제 자료를 작성한다. 이후 금융결제원은 익영업일 오전 10시까지 한국은행 및 각 금융회사에 차액결제 자료를 전송하고 한국은행에 결제를 요청한다. 각 금융회사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당좌예금계좌에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인 오전 11시 이전까지 부족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 자료를 바탕으로 오전 11시에 각 금융회사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입·출금함으로써 결제를 처리하고 각 금융회사에 이를 통지한다.

3. 결제리스크 관리

국내 지급결제에서는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에 금융회사의 자금부족, 파산 등의 사유로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한국은행은 결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차액결제에 참가할 수 있

74) 주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75) 자금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금융회사 간 거래의 시점과 결제 처리시점 간의 시차로 인해 청산의 결과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해야 할 금액이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더 큰 기관은 시차만큼 자금 수취가 지연됨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의 이자만큼 자금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반대의 포지션에 있는 기관은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이다.

는 기관의 요건을 설정하여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없고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 충분한 결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다른 참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차액결제와 관련된 의무를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대행하도록 한다.⁷⁶⁾ 또한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부족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중당좌대출 제도를 통하여 일중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한다.⁷⁷⁾ 결제에 따른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때에는 결제가 완결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참가기관의 회생, 파산의 상황에서도 무효화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로써 순이체한도 설정 및 관리, 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의 납입,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 제도를 두고 있다. 순이체한도 제도는 차액결제 거래로 인한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가능성 및 그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각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게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액에서 다른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인 미결제 순이체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⁷⁸⁾ 각 금융회사는 자신의 과거 최대 순이체액, 향후 대고객 거래규모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이체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금융결제원의 순이체한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도 소진상황을 수시로 조회함으로써 일중 미결제 순이체액을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하게 된다.⁷⁹⁾ 한국은행은 한도 초과가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증액하도록 지도한다.⁸⁰⁾

한국은행은 차액결제에 참가하는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 적격증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특정 금융회사의 결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제

76)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233면

77)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164면

78)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230면

79)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230면

80)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230면

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여 결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한다.⁸¹⁾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하여 결제 부족자금 보전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자금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금융회사들이 이를 공동분담하게 된다.⁸²⁾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별 공동분담금 내역과 결제시점을 금융결제원에 통보하면 금융결제원은 차액결제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전송하고 한국은행은 동 자료를 기준으로 결제를 다시 실시하게 된다.⁸³⁾ 결제를 불이행한 금융회사는 이후 이자를 가산하여 공동분담한 금융회사들에게 공동분담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⁸⁴⁾

4. 법적 구조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청산의 방식은 다수의 금융회사 간 채권 및 채무금액을 차감하는 다자간 청산이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 간 지급지시 정보를 중계하고 거래를 대사 및 확인한 후 결제금액을 산출하여 결제기관에 결제를 요청할 뿐 직접 거래 당사자로 금융회사 간 거래에 개입하거나 금융회사의 결제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청산대리인으로서만 기능하는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에서 청산은 다자간 대리인 청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 지급결제 청산에서 취하고 있는 다자간 대리인 청산의 구조는 CCP 청산방식과 비교했을 때 청산기관이 청산 관련 채권 및 채무의 당사자가 되는지 여부 및 결제 이행에 대한 책임부담 주체가 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CCP 청산에서는 대리인 청산에서와 달리 청산기관이 직접 채권 및 채무의 당사자가 되어 결제 이행을 보증하고 결제 불이행 발생 시 이를 해소하여 결제를 완료할 책임을 부담한다.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청산은 한국거래소가 CCP로서 기능하는 CCP 청

81)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231면

82)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232면

83)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233면

84)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233면

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지급결제 청산의 방식과 비교하여 그 법적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거래소는 모든 매매거래에서 매매 당사자 쌍방의 채권 및 채무를 이행받는 상대방이 됨으로써 매수 회원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해 매도 회원에게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고⁸⁵⁾ 매수 회원은 매도 회원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바,⁸⁶⁾ 이는 법적으로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⁸⁷⁾ 또한 한국거래소는 CCP로서 결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회원이 결제시한까지 대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유동성을 공급하여 매도 회원에게 결제를 이행하고 미납 회원에게는 결제지연손해금을 부과하며,⁸⁸⁾ 회원의 결제 불이행을 대비하여 한국거래소의 결제적립금과 회원의 증거금 및 공동기금 등 결제이행 재원을 마련해두고 결제 불이행 시 이를 사용함으로써 결제이행을 보증한다.⁸⁹⁾

II. 해외의 청산업무 처리 현황

1. 일본의 청산업무 처리현황⁹⁰⁾

일본 지급결제에서의 청산업무는 일본 은행 자금결제연합회인 Zengin-net이 운영하는 Zengin System을 통하여 처리된다. Zengin-net은 원활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금융회사 간 자금결제를 실행하고 이용자 보호 및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85) 한국거래소, 앞의 책, 16면

86) 한국거래소, 앞의 책, 44면

87)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676면

88) 한국거래소, 앞의 책, 137면

89) 한국거래소, 앞의 책, 140면

90) 주로 Zengin-net 정관(一般社団法人 全国銀行資金決済ネットワーク 定款) 및 Zengin System 운영절차(一般社団法人 全国銀行資金決済ネットワーク 業務方法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Zengin-net은 Zengin System을 통해 지급결제에서의 청산을 CCP 방식으로 처리한다. 청산대상 거래는 Zengin System을 통해 처리된 자금이체 거래이다. Zengin-net은 CCP로서 참가기관으로부터 청산대상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고 반대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B은행으로의 지급지시가 처리된 경우 A은행과 B은행 간의 채권 및 채무관계는 A은행과 Zengin-net 간, B은행과 Zengin-net 간의 채권 및 채무관계로 대체된다.⁹¹⁾ 즉, 거래에 따라 발생한 금융회사 간 채권 및 채무관계는 각 금융회사와 Zengin-net 간의 채권 및 채무관계로 전환되어 Zengin-net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로서 기능하게 된다.⁹²⁾ Zengin-net은 채무인수를 통하여 각 참가기관에 대하여 Zengin-net이 부담하게 된 채무금액의 합계와 취득한 채권금액의 합계의 차액을 계산하여 참가기관별 결제금액을 산출한다. Zengin-net이 청산과정을 거쳐 산출한 결제금액은 일본 중앙은행의 BOJ-net을 통해 일본 중앙은행에 개설된 Zengin-net의 계좌와 각 금융회사의 계좌 간 자금 이체를 통하여 결제처리 된다.

Zengin System의 참가기관은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예금 수취기관이어야 하며, 직접 참가기관과 차액결제의 대행을 직접 참가기관에 위탁하는 위탁 참가기관으로 구분된다. 결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참가기관은 순이체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순이체한도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Zengin-net은 참가기관이 제공한 담보를 참가기관의 Zengin-net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게 될 경우 Zengin-net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유동성 공급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거나 유동성 공급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이 참가기관의 결제 불이행을 해소하는 데 부족한 경우 다른 참가기관에게 이를 분담하도록 하여 최종적인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결제 이행을 보증한다. 이후 Zengin-net은 결제를 불이행한 참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여 유동성 공급은행 또는 부족자금을 공동 분담한

91) 中島真志=宿輪純一・前掲注(6) 306頁

92) Zengin-net 홈페이지 (2023.11.7. 방문) <https://www.zengin-net.jp/en/zengin_net/pdf/zengin-e.pdf>

참가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한다. 일본 중앙은행은 적격 담보를 제공한 참가기관에게 일중 당좌대출을 통해 결제자금 부족에 일중 유동성을 공급한다.⁹³⁾

2. 캐나다의 청산업무 처리현황⁹⁴⁾

캐나다 지급결제에서의 청산업무는 비영리 민간기관인 캐나다 지급결제협회(Payments Canada)가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인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를 통해 처리된다.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에 따라 지급결제에서의 청산 및 결제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동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간 연계, 새로운 지급수단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캐나다 중앙은행을 포함하여 캐나다의 국내 은행과 승인된 외국은행, 기타 예금수취기관을 회원으로 한다.⁹⁵⁾

ACSS를 통한 청산대상 업무는 장표 기반 지급수단 및 전자적 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이다. 지급결제협회는 ACSS를 통해 참가기관의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참가기관별 채권 또는 채무금액에 해당하는 차액을 산출하여 중앙은행에 제공한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협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참가기관의 결제계좌에서 결제를 처리한다. 결제에 따른 지급은 취소, 재지급 또는 무효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결제완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ACSS의 참가기관은 직접 참가기관, 그룹 참가기관, 청산 대행기관으로 구분되어 그 참가요건이 설정되어 있다. 참가기관은 결제불이행에 대

93) CPSS,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Japan”, CPSS-Redbook-2012, 2012, p.286

94) 주로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규정(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By-law No.3 - Payment Items and 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95)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홈페이지 (확인일자 2023.11.7.) <<https://www.payments.ca/about/our-members-stakeholders/members>>

비하기 위하여 지급결제협회가 산정한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지급결제협회는 담보에 대한 평가결과 불충분한 경우 추가적인 담보제공을 요구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결제자금이 부족한 참가기관에게 대출을 통해 일중 유동성을 제공한다. 참가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중 유동성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담보로 결제자금 부족분을 충당하지 못하여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지급결제협회는 다른 참가기관들에게 부족자금을 분담하도록 하며 결제를 불이행한 참가기관은 사후에 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해당 참가기관들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지급결제협회는 ACSS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참가기관 간 지급거래를 처리하고 차액결제자료를 작성하여 중앙은행에 결제를 요청할 뿐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를 CCP로 볼 수는 없으며 캐나다의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적 구조는 지급결제협회가 청산대리인으로서 기능하는 대리인 청산에 해당한다.

3. 미국의 청산업무 처리현황⁹⁶⁾

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으로는 ACH(Automated Clearing House), 수표청산시스템(Check clearing System), RTP공동망(Real-Time Payments Network) 및 FedNow가 있다. 이 중 RTP공동망과 FedNow는 금융회사 간 지급금액과 수취금액 간 차감 없이 거래 건별 총액을 즉시 결제하는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으로 결제가 처리되므로⁹⁷⁾ 청산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⁹⁸⁾ 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연방준비은행과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⁹⁹⁾ ACH는 미국 연

96) 주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Operating Circular 12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97) TCH 홈페이지 (방문일자 2023.11.7.) <<https://www.theclearinghouse.org/payment-systems/rtp>> 및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 (방문일자 2023.11.7.) <<https://www.frb services.org/financial-services/fednow/about.html>>

98) 中島真志=宿輪純一・前掲注(6) 11頁

방준비은행이 운영하는 FedACH와 민간기관인 TCH(The Clearing House)가 운영하는 EPN으로 구분되며, 수표 청산시스템 또한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TCH 등 민간기관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TCH는 상업은행들이 소유하는 민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다.¹⁰⁰⁾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는 다자간 결제시스템인 NSS(National Settlement Service)에서는 EPN을 통한 거래와 민간 수표교환소를 통한 거래 등을 결제처리한다.¹⁰¹⁾ NSS의 참가기관은 연방준비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예금취급기관이며,¹⁰²⁾ 참가기관은 결제그룹(settlement arrangement)을 형성하여 결제대행기관(settlement agent)을 선정한 후 결제대행기관을 통하여 거래에 대한 결제요청을 처리한다. 결제대행기관은 참가기관의 거래별 차액을 산출하여 차액결제자료를 작성한 후 연방준비은행으로 전송하고 연방준비은행은 동 차액결제자료를 바탕으로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참가기관의 계좌에서 결제처리한다. 연방준비은행은 결제대행기관이 전송한 차액결제자료상의 채권금액의 합계와 채무금액의 합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결제를 처리한다.

연방준비은행은 청산의 결과 채무상태에 있는 참가기관이 영업정지, 폐업 또는 파산하였거나 당좌예금계좌 내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결제처리를 거부한다. 결제처리가 거부된 경우 결제대행기관은 연방준비은행에 결제를 다시 시도해보도록 요청하거나 결제를 불이행한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결제계좌에 자금을 추가적으로 입금하도록 하거나 결제를 불이행한 참가기관의 결제금액을 제외하고 결제금액을 산출하여 결제를 다시 처리하도록 연방준비은행에 요청한다. 결제를 불이행한 참가기관의

99) 한국은행,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지급결제조사자료 제2020-3호, 2020.9, 86면

100) TCH 홈페이지 (방문일자 2023.11.7.) <<https://www.theclearinghouse.org/payment-systems/rtp>>

101)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하는 FedACH와 수표교환시스템에서의 거래는 연방준비은행이 청산내역을 산출하여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참가기관의 계좌에서 결제처리한다.

102) 미국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 (방문일자 2023.11.7.) <<https://www.frb.services.org/financial-services/national-settlement-service>>

결제금액을 제외하고 결제를 다시 처리한 이후에는 그 결제는 최종적이며 취소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결제완결성을 보장한다. 또한 연방준비은행은 결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가기관에게 일중 당좌대출을 제공한다.¹⁰³⁾

NSS에서 결제대행기관은 차액결제자료를 작성하여 결제기관인 연방준비은행에 전송하는 청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채무를 부담하는 것까지를 그 역할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CCP로 볼 수는 없고 청산대리인으로만 기능한다고 볼 수 있는바, NSS에서의 청산은 다자간 대리인 청산방식에 해당한다.

4. 호주의 청산업무 처리현황¹⁰⁴⁾

호주의 소액결제시스템으로는 호주 지급결제협회(APN; Australian Payments Network)의 APCS(Australian Paper Clearing System), BECS(Bulk Electronic Clearing System), CECS(Consumer Electronic Clearing System), BPAY사의 BPAY시스템, 및 NPP(New Payment Platform) Australia의 FSS(Fast Settlement System) 등이 있다. 이 중 FSS의 경우 실시간 총액 방식으로 결제 처리되기 때문에¹⁰⁵⁾ 청산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호주 지급결제협회는 지급결제산업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기관이며,¹⁰⁶⁾ BPAY사는 전자납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 회사이다.¹⁰⁷⁾

호주 지급결제협회가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및 BPAY 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청산의 과정을 거쳐 호주 중앙은행의 RITS(Reserve Bank

103) CPSS,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CPSS-Redbook-2012, 2012, p.490

104) 주로 호주 중앙은행의 RITS Regulations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105) NPP Australia 홈페이지 (방문일자 2023.11.7.) <<https://nppa.com.au/the-platform/>> 참조

106) Australian Payments Network, “2022 Annual Review”, 2022, p.4

107) BPAY 홈페이지 (방문일자 2023.11.7.) <<https://www.bpay.com.au/>>

Information and Transfer System)를 통해 결제처리된다. RITS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참가기관의 신청이나 배치 관리자(batch administrator) 또는 호주 중앙은행의 지정에 따라 각 배치 관리자들이 관리하는 그룹에 속하게 되며, 각 배치 관리자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그룹 내 거래에 대하여 다자간 청산을 통해 차액을 산출하여 차액결제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호주 중앙은행으로 전송한다. 호주 중앙은행은 배치 관리자들이 작성한 자료를 기준으로 참가기관의 결제계좌(ESA; Exchange Settlement Account)에서 결제처리한다.

배치 관리자는 호주 중앙은행의 승인에 따라 거래에 대한 CCP로서 기능할 수도 있으나 현재 증권결제에 대한 배치 관리자만이 CCP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급결제에서의 청산을 수행하는 배치 관리자의 경우 CCP가 아닌 청산대리인으로서만 기능한다. 따라서 호주 지급결제에서의 청산은 다자간 대리인 청산에 해당한다.

배치 관리자를 통한 청산 및 RITS를 통한 결제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호주 중앙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한 기관이어야 하며, 호주 중앙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호주 중앙은행은 RP(Repurchase Agreement) 방식으로 참가기관에 일중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한 RITS를 통한 거래는 최종적이며 취소, 변경 및 무효화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여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5. 영국의 청산업무 처리현황¹⁰⁸⁾

영국의 소액결제시스템으로는 Pay.Uk가 운영하는 Bacs, Faster Payment Service, Image Clearing System, Link Scheme Holdings Ltd.가 운영하는 LINK 등이 있다. Pay.Uk는 민간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비

108) 주로 Bank of England, “Bank of England’s RTGS and CHAPS services: Service Description”, February 2018. 및 Bacs Payment Schemes Limited *et al.*, “An Introduction to the UK’s Interbank Payment Schemes”, 2016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영리 기관이고 Link Scheme Holdings Ltd.는 ATM 네트워크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영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영란은행이 운영하는 CHAPS에서 결제처리된다.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한 거래의 차액을 산출하여 결제자료를 작성한 후 영란은행으로 전송하고 영란은행은 동 자료를 기반으로 결제계좌에서 결제처리한다. 청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CCP로 볼 수 없고 청산대리인으로서만 기능하는바, 영국 지급결제에서의 청산의 법적 구조는 다자간 대리인 청산에 해당한다.

CHAPS의 참가기관은 직접 참가기관과 간접 참가기관으로 구분되어 참가요건이 설정되어 있다.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참가기관은 순이체한도를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금을 적립해두어야 한다. 참가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영란은행은 담보금을 사용하여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영란은행은 일정 담보를 조건으로 참가기관에게 일중 유동성을 공급한다.¹⁰⁹⁾ 지급지시로부터 결제에 이르는 과정은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여 결제완결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109) 한국은행, 앞의 자료(각주98), 100면

제 3 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적 규율 현황

제 1 절 국내의 법적 규율 현황

I. 개관

국내에는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하고, 지급수단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분산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를 채택하고 있다.¹¹⁰⁾ 지급결제의 청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청산을 포함하여 지급결제제도에서의 결제완결성 보장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와 한국은행법상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개념상 청산기관을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현행 법률로써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청산 전반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의 위임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과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 간 업무처리 준칙에 해당하는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청산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률로써 규율하고 있는 부분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2020년 11월 27일 및 2021년 11월 4일 각각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과 유사한 내용으로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청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청산에 대하여 법률로써 규율하고자 하는 논

110)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535면

의가 진행되고 있다.

II.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제81조에서는 지급결제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후술할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이 제정되었다.

한국은행은 동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해당 운영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행법에서는 지급결제제도 및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지급결제제도란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중앙은행,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며¹¹¹⁾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에는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및 결제를 위한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되는 바,¹¹²⁾ 청산기관은 청산을 위한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개념상 한국은행법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산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운영기준 개선 및 자료제출 요구대상이 된다.

111)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8면

112) 한국은행, 앞의 책(각주1), 8면

Ⅲ.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1. 법적 성격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은 한국은행법 제8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법 등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은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는 법규명령적 성격의 규정과 한국은행 내부에서 적용되는 행정규칙적 성격의 규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¹¹³⁾ 동 규정 중 금융회사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규명령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¹¹⁴⁾ 그 이외의 규정은 한국은행의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내부에 적용되는 성격의 규정들로¹¹⁵⁾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직접적,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고 해당 규정이 규율하고 있는 업무관계에 있어 한국은행과 금융회사는 사법적 관계를 이루게 된다.¹¹⁶⁾

2. 주요 내용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은 지급, 청산, 결제로 이어지는 지급결제의 과정 중에서 주로 결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결제의 전 단계로서 청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는 청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청산과

113) 노철우, “행정입법의 일환으로서 한국은행 규정의 의의, 성격 및 효력”, 금융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0, 59면

114) 노철우, 앞의 논문, 59면

115) 노철우, 앞의 논문, 61면

116) 노철우, 앞의 논문, 62면

결제의 과정을 포괄하여 주로 차액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청산기관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라는 용어의 범위에 개념상 청산기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는 청산 및 결제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참가요건, 처리절차, 업무 참가기관과 청산기관의 의무 및 해당 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 결제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세칙은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은행 총재의 결정으로 정하고 있고,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절차는 세칙에서 다시 위임한 세부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장의 결정으로 정한다.

3. 세부 내용

가. 청산기관에 관한 내용

(1) 청산기관의 지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제3호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급수단의 교환 또는 이체지시의 송수신을 중계하고 이에 따른 거래의 청산¹¹⁷⁾ 또는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지급수단의 교환 또는 이체지시의 송수신을 중계하고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산기관은 개념상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포함된다. 또한 청산에 따른 결제를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처리하는 청산기관은 동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한은금융망 이용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117)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는 청산의 정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청산기관의 의무

청산기관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먼저 동 규정 제3조 제6항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후술할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관련 규정, 업무처리절차, 참가기관, 전산시스템 등의 변경이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또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 또는 그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등 긴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동 규정 제40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한은금융망 이용기관으로서 동 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른 한은금융망 이용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사용 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등 긴급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을 마련할 의무, 동조 제4항에 따라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할 의무, 동조 제7항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관련 규정, 업무처리절차, 참가기관, 전산시스템의 변경이 한은금융망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은행과 미리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후술할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권한 및 자료제출요구권과 관련하여서는 동 규정 제36조 제2항 및 제39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의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한국은행의 권한에 관한 내용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감시대상 시스템은 동 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결제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분류된다.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는 동 규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¹¹⁸⁾ 및 전자금융공동망¹¹⁹⁾이 포함된다.

한국은행은 동 규정 제38조에 따라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하여는 안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등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해당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준의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동 규정 제36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절차,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통계작성 등을 위한 자료, 그 밖에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청산 및 결제업무의 운영에 관한 내용

(1) 업무 참가자격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는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을 통해 차액결제 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지급결제

118) 금융회사 이용고객이 거래 금융회사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도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결제원, 앞의 책(각주4), 147면)

119) 고객이 PC, 스마트폰 등으로 거래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타행이체, 거래확인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결제원, 앞의 책(각주4), 145면)

에서는 청산절차를 통해 확정된 결제금액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제된다. 따라서 지급, 청산, 결제로 이루어지는 지급결제의 전 과정이 한은금융망을 통한 차액결제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청산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인 금융회사들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차액결제업무 참가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 규정 제6조 제4항에서는 차액결제 참가자격에 대하여 동조 제3항에 따른 한은금융망 가입기관 중 차액결제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이 제4항의 요건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어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은금융망 가입기관이 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액결제업무 참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은금융망 가입자격을 갖추고 한은금융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은금융망 가입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 대상기관¹²⁰⁾으로서 재무건전성, 예상 이용건수, 전담인력, 업무지속능력 등 총재가 정하는 가입기준¹²¹⁾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은행과 한은금융망 가입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은금융망 가입기관이 차액결제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는 동 규정 제6조 제4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회사¹²²⁾로서 한국은행의 대출¹²³⁾이 가능할 것, 한국은행법 제87조¹²⁴⁾ 및 제88조¹²⁵⁾에 따라 한국은행이 자료제출을 요구

120) 당좌예금거래 대상기관의 유형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다.

121)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제4조 및 <별표5>에서 정한다.

122)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하며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23) 한국은행의 금융회사에 대한 여신업무의 범위는 한국은행법 제64조에서 정한다.

124)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가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25)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공동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일 것, 그 밖에 자본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리스크 관리능력 등 총재가 정하는 기준¹²⁶⁾을 충족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차액결제 참가기관은 동 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라 한국은행과 차액결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차액결제 참가기관은 동 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다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차액결제를 대행할 수 있다.¹²⁷⁾ 차액결제의 대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공동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일 것,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으로서 한은금융망 가입기준을 충족할 것, 자본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리스크 관리능력, 차액결제 대행한도, 차액결제대행계약 반영사항 등 총재가 정하는 그 밖의 기준¹²⁸⁾을 충족할 것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차액결제를 대행하는 차액결제 대행기관은 한국은행과 동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차액결제대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참가기관 간 결제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동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한은금융망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한국은행 총재는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한 후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기관은 동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과 한은금융망 이용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126)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제4조에서 정한다.

127) 해당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융투자회사와 서민금융기관이 은행에 차액결제 대행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업무 해설」, 2013.11, 6면)

128)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제74조에서 정한다.

(2) 업무 처리절차

차액결제 대상거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제32조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¹²⁹⁾을 통한 한은금융망의 참가기관 간 거래 및 그 거래에 따른 자금조정이다.

동 규정 제8조 제1항 및 동 세칙 제34조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청산절차를 통해 차액결제 대상 거래에 대한 차액결제 신청자료를 작성하여 동 세칙 제33조 및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인 오전 11시부터 1시간 전까지 한국은행에 송신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동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오전 11시에 결제처리한다.

라.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는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제11조의2에서는 결제에 따른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때에는 결제가 완결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여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동 규정에는 전술한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순이체한도,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예치,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 제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 제19조에 따라 참가기관은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차액결제 대상거래에 대하여 다른 참가기관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에서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을 차감한 미결제 순이체액의 상한인 순이체한도를 정하여 관리하

129) 어음교환시스템(외화표시 내국신용장어음교환 포함), 지로시스템,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기업·개인간(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전자금융공동망,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국가간공동망이 이에 해당한다.

여야 한다.

동 규정 제21조에서는 차액결제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동 규정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¹³⁰⁾을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하도록 한다. 결제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한국은행은 동 규정 제22조에 따라 담보증권을 결제를 불이행한 참가기관에 대한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담보증권의 사용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결제 자금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규정 제23조에 따라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들이 그 부족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추후에 결제를 불이행한 참가기관이 제24조에 따라 분담금을 납입한 다른 참가기관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그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차액결제 위탁기관의 경우에도 동 규정 제27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순이체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담보증권에 대하여는 차액결제 위탁기관이 동 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차액결제 대행한도 이상을 차액결제 대행은행에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차액결제 대행기관이 동 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차액결제 위탁기관 분을 포함하여 한국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130)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 국가철도공단·예금보험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특수채,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 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채,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발행된 지방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상법 제469조에 따라 발행된 회사채,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을 말한다.

Ⅳ.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

1. 법적 성격

금융결제원은 차액결제 대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업무별로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규약은 금융결제원과 참가기관 간 업무처리 준칙으로 기능한다. 금융결제원 규약은 금융결제원 업무별 위원회¹³¹⁾의 심의 및 이사회¹³²⁾의 결의를 거쳐 제정 및 개정된다. 실무적으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업무별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금융결제원 업무에 참가하는 기관은 업무별 규약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후 업무에 참가하게 된다. 업무별 규약에서는 공통적으로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참가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업무별 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되는 업무별 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은 업무별 참가기관의 합의를 거쳐 제정 및 개정되고 금융결제원과 참가기관 간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업무별 참가기관 간 계약의 성격을 지니며 특히 다수의 참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정해두고 참가기관이 참가 신청 시 동 계약의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약관으로 볼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규약에 관한 판결은 아니나 대법원은 2007. 11. 13. 선고 2007다1753 판결에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舊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대하여 “피고¹³³⁾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규정한 이상 이를 행정기관

131) 금융결제원 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결제원 및 이사회 비상임이사가 속한 기관(한국은행 제외)의 관련부서장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

132) 금융결제원 정관 제18조에 따라 원장, 전무이사 및 사원 중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 사원에서 1인, 준사원 중에서 1인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13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말한다.

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대신 증권거래법이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제정된 피고의 자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사이에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주요 내용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 및 시행세칙에서는 청산과 관련하여 주로 참가기관 간 지급지시정보 중계, 청산대상 거래의 결제금액 산출 및 한국은행 앞 차액결제자료 송신 등 청산업무의 실무적인 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결제기관인 한국은행이 제정 및 개정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이 결제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 및 시행세칙에서는 청산기관으로서 청산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청산에 관한 규정내용은 업무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후술할 세부 내용은 그 중 전자금융공동망업무 규약 및 시행세칙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 세부 내용

가. 청산업무의 운영에 관한 내용

(1) 업무 참가자격

전자금융공동망업무 규약 제4조 제1항에서는 전자금융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기관을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정관 제5조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사원 및 준사원은 은행법상 은행이며, 특별참가기관은 은행이 아닌 기관으로서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이다. 동조 제2항에서는 차액결제 위탁기관이 업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차액결제 대행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동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참가자격 이외에 금융결제원은 차액결제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참가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금융결제원 차액결제업무 참가기준에서는 제2조를 통해 참가자격에 대하여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차액결제 참가기준을 충족할 것, 동 규정에 따른 차액결제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을 보유할 것,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당좌예금계좌 개설요건을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다.

(2) 업무 처리절차

금융결제원은 청산기관으로서 지급지시 정보의 중계, 거래의 대사 및 확인, 결제금액의 산출, 결제자료의 전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금융공동망업무 규약 및 시행세칙에서는 이에 관한 세부 업무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규약은 제6조 제2항에서 전자금융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전자금융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세부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주로 동 세칙에서 정하고 있다.

청산업무의 처리절차를 업무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 세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지급지시정보를 중계처리한다. 지급인 거래 금융회사는 지급인의 지급요청을 금융결제원을 경유하여 수취인 거래 금융회사로 전송하고 수취인 거래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처리 후 처리결과를 다시 금융결제원을 경유하여 지급인 거래 금융회사로 전송한다. 지급인 거래 금융회사는 전송받은 처리결과를 지급인에게 통지한다.

금융결제원은 동 세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업무 종료 즉시 참가기관의 처리 건수 및 금액을 차변 및 대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이를 각 참가기관에 전송한다. 동조 제3항에 따라 참가기관은 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거래내역을 자신의 처리결과와 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동 규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참가기관 간 거래내역을 집계하여 거래 자금의 차액을 산출한다. 동조 제3항에 따라 거래 차액에 대하여는 기관 간 발생하는 자금수급 상의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하여 자금조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자금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 세칙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동 규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차액결제 자료를 동 규약 제9조 제2항, 동 세칙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 1시간 전인 오전 10시까지 참가기관 및 한국은행으로 전송하고 한국은행에 결제를 의뢰한다. 참가기관은 한국은행 당좌계좌의 잔액이 차액결제에 부족할 경우 동 규약 제10조에 따라 11시 전까지 부족금액을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후 동 규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의 차액결제자료를 기준으로 차액을 결제하고 이를 참가기관에 통지함으로써 청산 및 결제절차는 마무리된다.

나.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이 마련해둔 결제리스크 관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금융공동망업무 규약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설정된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가 적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참가기관 중 결제불이행 기관이 발생하여 다른 참가기관이 공동분담을 하게 된 경우 금융결제원은 동 규약 제9조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참가기관별 분담금 및 결제시점을 통보받아 참가기관별 분담금을 포함한 차액을 재산정하여 참가기관 앞으로 통지하고 한국은행 앞으로 결제를 의뢰한다.

V.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급결제제도에서의 결제완결성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 파산 시 지급결제제도를 통한 결제처리과정이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무효화될 수 있고 다른 금융회사의 결제가 연쇄적으로 불이행됨에 따라 금융시장 및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하게 되므로 회생, 파산의 상황에서 결제완결성 보장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¹³⁴⁾

결제완결성 보장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 금융시장 인프라의 원칙의 전신인 국제결제은행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CPSIPS; 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는 한편 파산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동법에 결제완결성 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도입되었다.¹³⁵⁾

결제완결성 보장에 관하여는 동법 제120조 및 제336조에서 정하고 있다. 동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특칙으로서 “지급결제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와 관련된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와 관련된 이체지시, 정산, 차감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의 상황에서 최종 결제 뿐만 아니라 결제가 이루어지기

134) 한국은행, “통합도산법(안)상의 결제완결성 보장 필요성”, 2004.12, 2면

135) 한국은행,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결제완결성 법적으로 보장”, 2005.3.3, 2면

까지 수행되는 지급지시, 결제금액 산출 등 청산의 효력도 부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법 제336조에서는 파산의 상황에 이를 준용한다.

결제완결성 보장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지정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신청에 의한 지정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의 직권에 의한 지정으로 구분된다. 신청에 의한 지정의 요건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¹³⁶⁾ 및 한국은행의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에 관한 규정¹³⁷⁾에서 정한다. 직권에 의한 지정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가 지급결제 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Ⅶ.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1. 주요 내용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청산기관을 전자금융보조업자의 한 유형인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라는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한 유형으로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결제중계시스템”에 대하여는 동조 제6호에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 운영체계”로 정의한다. 청산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했을 때 청산기관은

136) 동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결제위험 및 파급효과의 정도, 운영규칙의 내용, 결제자산의 유형, 결제 위험방지 대책 등을 요건으로 한다.

137) 동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 외에 장애, 재해, 파업, 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급결제업무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업무지속 계획을 구비하도록 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제11조를 통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 간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술한 내용 이외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청산 및 청산기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2020년 11월 27일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2021년 11월 4일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청산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후 다양한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이 제기되며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을 고려하여¹³⁸⁾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대안이다.¹³⁹⁾ 청산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양 법률안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윤관석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발의된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청산 관련 사항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 개방의무를 통한 오픈뱅킹¹⁴⁰⁾의

13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137, 발의연월일 : 2021.11.4,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면

13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3면

140)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업자에게 API를 사용하여 제공하고 제3자업자들이 그 정보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제도화 및 빅테크 기업이 하는 전자지급거래의 외부 청산 의무화로 구분된다. 개정안에서는 관련 개정이유에 대하여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여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급결제제도를 안정적,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¹⁴¹⁾

2. 세부 내용

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에 관한 내용

(1) 전자지급거래청산업 · 청산시스템 · 청산기관의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에 대하여 제2조 제5호의2에서 “청산대상업자가 청산대상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를 차감하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여 결제기관에 그 결제를 지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산대상업자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청산대상거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거래이다. 전자지급거래에 대하여는 동조 제2호에서 지급인, 수취인 또는 지급인을 대리하거나 대행하는 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을 맡기거나 이들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거나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조 제5호의2에 따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범위에는 스스로 결제를 처리함으로써 청산과 결제 기능을 겸하는 것도 포함된다.

동조 제6호에서는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전자지급수단, 업무규정,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순섭, “디지털 금융혁신관련 법령분석과 향후 입법 · 정책과제”,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0.9.30, 42면)

14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3면

정보자산 등을 비롯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체제로, 동조 제5호의3에서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을 제38조의3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전자지급거래청산업에 대한 허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8조의3을 통해 허가제를 도입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동조 제2항에서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허가 요건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 사업계획, 인력과 물적 설비,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 임원, 대주주 또는 결의권 있는 사원,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을 갖추 것을 정하고 있다.

동법 개정안 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동조 단서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¹⁴²⁾ 하에 허가 없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동법 개정안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에 해당하는 기능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에 대하여는 부칙 제11조를 통해 동법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허가를 받을 것으로 의제한다.

(3)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8조의9에서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업무를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42) 동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접 또는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로서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할 것, 청산대상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청산대상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의 차감을 통하여 전자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고유업무는 동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청산대상거래의 확인, 청산대상업자 앞 청산대상거래와 관련한 지급지시 전달, 청산대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차감, 결제금액 확정 및 결제기관 앞 결제지시,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부담,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업무로 구성된다. 결제지시와 관련하여서는 결제지시를 대신하여 스스로 결제처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조 제5호의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 부담 및 제6호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업무는 청산의 유형 중 CCP 청산방식인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고유업무 이외에 수행할 수 있는 겸영업무를, 제3항에서는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에 부수하는 부수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신고의 내용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이거나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수행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4)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의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6조의6에 따라 전자지급거래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업무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안정과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동법 개정안 제38조의11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안 된다.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동법 개정안 제38조의10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¹⁴³⁾을 포함하여 동조 제1항에 따라 청산업무규정을 정하여야

143) 청산대상거래에 관한 사항, 청산대상업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전자지급거래청산업으로서 행하는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부담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관한 사항, 청산대상업자가

한다.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동법 개정안 제38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허가요건으로 동법 개정안 제38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청산업무규정 변경 시에는 동법 개정안 제38조의10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은 동법 개정안 제38조의16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은행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관련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한국은행 및 금융위원회의 권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8조의21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진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법 개정안 부칙 제11조 제2항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업무 중 한국은행이 결제기관으로서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한 업무, 즉 차액결제 대상이 되는 업무는 금융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닌 자가 청산대상업자를 통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하여금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전자지급거래청산의 중개·주선이나 대리에 관한 사항, 외국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전자지급거래청산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자지급거래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하여 동법 개정안 제38조의4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허가요건의 심사 및 허가, 제38조의10 제2항에 따른 청산업무규정의 변경에 대한 승인, 제38조의17에 따른 영영양도 등¹⁴⁴⁾의 승인, 제38조의22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허가 취소,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행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행은 동법 개정안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또는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6) 결제리스크 관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청산대상업자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동법 개정안 제38조의12에 따른 청산증거금과 제38조의13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관한 규정을 통해 채무이행 재원을 마련하여 결제리스크를 관리한다.

청산대상업자는 동법 개정안 제38조의12 제1항에 따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청산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청산대상업자의 채무불이행 시 청산증거금으로 동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청산대상업자는 동법 개정안 제38조의13 제1항에 따라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에 따라 청산대상업자는 동 손해배상에 관

144)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우 영영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민법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인 경우 법인의 해산 또는 파산신청을 말한다.

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동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손해를 보전한 경우에 손해를 발생시킨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나.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 개방의무를 통한 오픈뱅킹의 제도화에 관한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전술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의무 외에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에 대한 개방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 간의 사적인 협약으로 이루어지던¹⁴⁵⁾ 오픈뱅킹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동법 개정안 제36조의8에서는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전자금융업무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오픈뱅킹 이용사업자¹⁴⁶⁾에게 개방하도록 지정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오픈뱅킹 제공사업자¹⁴⁷⁾는 개방된 시스템을 통하여 오픈뱅킹 이용사업자에게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정한다.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및 오픈뱅킹 제공사업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오픈뱅킹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전자금융업무를 제공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방대상이 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에 대하여 동조 제4항에 따라 오픈뱅킹 이용사업자와 오픈뱅킹 제공사업자의 요건, 오픈뱅킹 이용사업자와 오픈뱅킹 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금융보안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 빅테크 기업 전자지급거래의 외부 청산 의무화에 관한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제36조의9 제1항을 통해 전자지급거래

14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12면

146)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47)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의 빈도, 회사 또는 법인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른바 빅테크 기업을 말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거래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을 통해 청산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지급인과 수취인이 거래하는 전자금융업자가 동일한 경우의 거래도 청산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는 실제 자금의 이전 없이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예약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면서 거래 발생 시 이용자 계정의 원장에 입·출금 기록만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처리에서는 외부 청산기관을 통한 청산을 거치지 않았던 부분이다. 동법 개정안에서는 개정이유를 통해 해당 거래에 대한 외부 청산 의무화의 목적을 빅테크 기업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¹⁴⁸⁾

빅테크 기업의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외부 청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고려하여 동법 개정안 제36조의9 제2항 각 호¹⁴⁹⁾에서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3. 개정 추진과정에서의 논의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2023년 현재 제21대 국회 계류중으로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¹⁵⁰⁾ 특히 전자지급거래청산과 관련된 내용을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견해 대립이 존재한다.

14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14면

149) 지급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수취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해당 전자지급거래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청산대상거래 확인, 지급지시 전달, 다수의 채권 및 채무 차감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50) 국회 의안법률정보시스템 (방문일자 2023.11.7.)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견해 대립은 주로 청산업무에 대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권한 충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에 반대하는 견해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제도화하더라도 중앙은행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먼저 청산과 결제 기능의 분리 가능성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제도화에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청산업무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결제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이를 지급결제제도에서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산업을 금융위원회의 감독대상으로 제도화하는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자이자 관리자로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¹⁵¹⁾ 이에 대하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청산과 결제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은 사적 계약인 한은금융망 이용약정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산업을 제도화한다고 하여 한국은행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¹⁵²⁾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의 청산업에 대한 감독권에 관한 견해 대립이 존재한다. 제도화에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업의 허가취소, 시정명령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 등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유지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본다.¹⁵³⁾ 이에 대하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금융위원회는 현재에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금융결제원의 주무관청으로서 금융결제원의 사무에 대한 검사, 감독 및 설립허가 취소 권한을 법률상 보유하고 있고 금융결제원이 법적 청산기관으로서 공적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려면 최소

151) 이용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 제384회 국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1.2, 131면

152) 이용준, 앞의 자료, 132면

153) 이용준, 앞의 자료, 131면

한의 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본다.¹⁵⁴⁾

또한 금융위원회의 청산기관의 결제지시업무 허가 권한과 관련해서도 견해 대립이 존재한다. 제도화에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청산기관에 대하여 한국은행에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허가함에 따라 청산기관이 사실상 자동적으로 한은금융망에 가입하게 되어 청산기관의 한은금융망 이용여부를 승인하는 한국은행의 고유 기능을 침해한다고 한다.¹⁵⁵⁾ 이에 대하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청산기관의 결제지시업무를 허가하더라도 청산기관의 한은금융망 이용은 한국은행 규정 및 이용약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한은금융망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박한다.¹⁵⁶⁾

나아가 제도화에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에게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폭넓은 감시·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업무가 감독당국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한다.¹⁵⁷⁾ 이에 대하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지급결제제도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의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¹⁵⁸⁾

한편,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간 자금이체를 전담처리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위기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개별 빅테크 파산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결제 안전성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존재한다.¹⁵⁹⁾ 또한 오픈뱅킹 제도화에 대하여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참가는 결제 불이행 발생 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연결되는 것으로 참가기준은 한국은행이 결정해야 하며 오픈뱅킹시스템의 참가기준도 이에 해당하는데 오픈뱅킹을 제도화할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준 제·

154) 이용준, 앞의 자료, 133면

155) 이용준, 앞의 자료, 131-132면

156) 이용준, 앞의 자료, 133면

157) 이용준, 앞의 자료, 132면

158) 이용준, 앞의 자료, 134면

159) 이용준, 앞의 자료, 138면

개정 권한이 무력화된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¹⁶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전자지급거래청산 인프라에 대한 법제화 논의는 기능적 관점에서 지급결제제도에서 청산이라는 기능을 독립적으로 볼 것인지, 청산기관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구분할 것인지, 현 시점에서 청산기관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 감독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 및 감독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구체적인 감독 체계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누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¹⁶¹⁾ 정부위원회의 검토에서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와 관련한 개정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¹⁶²⁾ 그러나 이후 양자 간 견해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좁히지는 못하였고 현재까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청산 및 결제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지급결제에서의 청산과 달리 자본시장에서는 청산 전반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바, 법제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국내 법률에서 청산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산업무를 장내 거래에 대하여 거래소가 수행하는 업무와 장외 거래에 대하여 금융상품거래청산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장내 거래에 대한 청산에 관하여는 동법 제378조 제1항에서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로서

160) 이용준, 앞의 자료, 145-146면

161) 국회사무처, 정부위원회회의록, 제384회 국회 제3차 정부위원회, 2021.2.25, 6면

162) 이용준, 앞의 자료, 134면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장의 거래에 대한 청산에 관하여는 동법 제9조 제25항에서 청산대상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장외 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범위는 동법 제323조의10 제1항에 따라 청산대상거래의 확인,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채무부담, 청산대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차감, 결제목적물·결제금액의 확정 및 결제기관에 대한 결제지시,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이다.

결제에 대하여는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증권시장에서의 결제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 인도 및 대금지급업무로서 동법 제297조에서 전자등록기관이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결제는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로서 동법 제378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도입된 청산 관련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청산업 및 청산기관의 정의, 무인가 청산의 금지, 청산업의 인가요건 및 절차, 청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임원의 자격, 청산기관의 업무범위, 청산업무규정의 요건, 청산대상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금지, 결제 불이행 리스크 관리제도, 주식소유의 제한, 금융위원회의 청산기관에 대한 권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청산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청산업무의 범위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청산대상거래와 관련된 지급지시를 전달하는 업무가 추가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동

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청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CCP로서의 기능인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결제금액 산출 및 결제지시 기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이 도입된 것은 시장별로 분리 운영되던 청산 및 결제기능의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¹⁶³⁾ 청산 및 결제 인프라의 개편을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舊 한국예탁결제원)은 청산 및 결제기능 개편 논의를 위해 2005년 3월부터 협의를 진행하여 2006년 8월에 합의를 도출해냈다. 동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청산 및 결제 관련 사항을 규정하게 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청산 및 결제의 업무범위, 수행주체,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¹⁶⁴⁾

VII. 소결

지급결제에서의 청산에 관하여 한국은행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청산 및 청산기관의 정의, 청산기관의 지위 및 의무, 청산업무의 운영, 청산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청산 및 청산기관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반면, 그 외 법률 및 규정, 규약에서는 청산 및 청산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개념상 청산에 해당하는 업무 및 청산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

16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 “거래소·예탁결제원 청산·결제기능 및 소유구조 개편 합의”, 2006.8.31, 1-2면

164) 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 앞의 자료, 5면

다. 현행 법률 및 규정을 기준으로 청산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한다.

청산업무의 운영에 대하여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에서 업무 참가자격, 세부 업무처리절차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 다만, 동 규정 및 동 규약에 규정된 업무 처리절차를 통해 청산업무의 범위를 간접적으로 도출해낼 수는 있으나 동 규정 및 동 규약에 청산업무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반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청산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산업무는 현재에는 청산기관과 한국은행 간 한은금융망 이용약정 및 청산기관과 참가기관 간 업무별 규약에 의거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하여 허가제로 운영하고자 한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청산기관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는 시스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지속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업무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안정과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청산대상업자에 대한 차별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에는 청산기관과 참가기관이 사적 계약인 업무별 규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되 그 변경이 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한국은행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청산기관이 청산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하였다.

청산기관 및 청산시스템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은 한국은행법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에서는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한다.

결제완결성 보장을 포함하여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규율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산 및 결제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가 전체 금융시스템에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청산 및 결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결제리스크 관리의 문제를 법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종합해보면 현재에는 청산업무 전반에 대한 규율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계로 청산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청산업무 전반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업무범위 및 청산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제 2 절 해외의 법적 규율 현황

I. 개관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한 국내와 달리 해외에는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법제들이 존재한다. 다만,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한다고 하여 해당 법률에서 청산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¹⁶⁵⁾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에서 청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이다.

반면,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에서 청산에 관하여 규율하는 대신 청산

165) 가령, 싱가포르의 지급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2019)은 지급결제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기능하지만,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이나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입법례들도 나타난다. 캐나다의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과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미국의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과 연방예금보험공사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과 지급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법(Payment Systems and Netting Act 1998), 영국의 은행법(Banking Act 2009)과 결제완결성 보장규정(The 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Settlement Finality) Regulations 1999)이 그러한 입법례에 해당한다.

제1장에서 살펴본 청산 및 결제업무의 처리절차 등 업무운영에 대하여는 대부분 법률이 아닌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의 규정¹⁶⁶⁾을 통해 정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법률의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法)

1. 주요 내용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法)은 일본에서 지급결제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기능한다. 동법은 자금결제에 관한 서비스의 적절한 실시를 확보하고 이용자 등을 보호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결제와 관련된 업무의 등록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자금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편리성의 향상에 이

166) Zengin-net의 Zengin System 운영절차(一般社団法人 全国銀行資金決済ネットワーク 業務方法書),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규정(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By-law No.3 - Payment Items and 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Operating Circular 12, 호주 중앙은행의 RITS Regulation 등에서 정하고 있다.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규율대상이 되는 자금결제와 관련된 업무를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 자금이동업,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암호자산교환업, 환거래분석업, 자금청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자금청산업이 지급결제에서 청산업무에 해당한다.

청산과 관련하여 동법에서는 자금청산업 및 자금청산기관의 정의, 자금청산기관의 업무 및 의무, 자금청산기관에 대한 금융청의 권한, 결제 리스크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을 통해 일본에서 자금청산업은 면허제로 운영된다. 일본에서는 청산기관이 CCP로서 청산 참가기관 간 자금결제와 관련된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담하므로 청산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자금결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서의 자금청산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면허제를 도입하였다.¹⁶⁷⁾ 또한 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업무방법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을 자금청산기관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¹⁶⁸⁾

2. 세부 내용

가. 청산업에 관한 내용

(1) 자금청산업의 정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항에서는 “자금청산업”에 대하여 “환거래와 관련된 채권·채무의 청산을 위하여 채무의 인수, 경계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은행 등 간에서 발생한 환거래에 기초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산에 따른 채무의 부담행위를 자금청산업 업무의 중심 요소로 정의한 것으로 CCP 청산을

167) 高橋康文ほか『逐条解説 資金決済法』（金融財政事情研究会，増補版，2010年）223頁

168) 高橋康文ほか・前掲注（165）244頁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자금청산업에 대한 면허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에서는 자금청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예금수취기관 및 일본은행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면허요건에 관하여는 동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자금청산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충분할 것, 자금청산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산적 기초가 있고 자금청산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전망이 양호할 것, 자금청산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충분한 사회적 신용이 있는 인적 구성을 갖출 것과 같은 요건이다.

동법 제66조 제2항에서는 면허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면허를 부여한 이후에도 면허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동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청산기관에 관한 내용

(1) 자금청산기관의 정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항에서 자금청산기관을 동법에 따라 자금청산업 면허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자금청산기관의 업무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기관은 자금청산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다. 다만, 단서 조항에 의해 자금청산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우려가 없

다고 인정되는 업무의 경우 내각부령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청산기관은 동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자금청산업의 일부를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자금청산업무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동법 제71조 제2항에서 청산기관이 업무방법서에 정해야 하는 사항들¹⁶⁹⁾을 열거하고 있는바, 자금청산업무의 세부 내용은 동 업무방법서를 따르게 된다. 동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Zengin-Net은 Zengin System 운영절차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¹⁷⁰⁾

(3) 자금청산기관의 의무

청산기관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청산업을 수행해야 하며, 동법 제72조에 따라 업무방법서에 자금청산업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참가자가 해당 손실의 전부를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그 밖에 자금청산업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74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동법 제75조에 따른 청산업에 관한 부당한 차별 금지의무를 부담한다.

169) 자금청산업의 대상으로 하는 채무의 원인이 되는 거래의 종류, 자금청산업의 상대방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자금청산업으로써 하는 채무의 인수, 경정, 그 밖의 방법에 관한 사항, 청산 참가자의 채무 이행의 확보에 관한 사항, 자금청산업의 계속적 수행의 확보에 관한 사항, 자금청산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가 자금청산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자금청산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에 관련된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게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자금청산업에 관한 계약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70) 한국은행, 앞의 자료(각주98), 71면

후술할 감독기관의 감독권에 따라 청산기관은 정관 또는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6조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자본금액 등의 변경에 대하여는 동법 제77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78조에 따른 자금청산업에 관한 장부서류 작성 및 보존의무, 동법 제79조에 따른 사업연도별 자금청산업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부담한다.

다. 금융청의 권한에 관한 내용

일본 금융청은 청산기관에 대하여 감독 권한을 가진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제3절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0조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은 자금청산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산기관 또는 청산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직원을 청산기관 또는 청산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및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게 하여 업무 및 재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81조에 따라 청산기관에 대하여 업무운영 또는 재산상황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라.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

전술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금융시스템에서의 자금청산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청산기관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 및 청산업무의 지속적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청산기관의 의무로 정한 것이다.¹⁷¹⁾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청산 참가기관에게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파산법제상의 규정이 적용되어 청산업무의 수행에 제

171) 高橋康文ほか・前掲注(165) 246頁

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¹⁷²⁾ 동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업무방법서에서 미결제채무 등¹⁷³⁾에 관하여 차액계산의 방법, 담보의 충당방법 및 그 밖의 결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참가기관에게 파산, 재생, 갱생, 특별 청산 또는 승인원조절차가 개시된 경우 미결제채무 등에 관하여 청산기관 또는 해당 청산참가자가 가지는 청구권 금액의 산정 및 그 밖의 결제 방법은 해당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정함으로써 청산업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¹⁷⁴⁾ 이에 근거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결제리스크 관리수단으로 작동하게 된다.

Ⅲ. 캐나다의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 ·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1. 주요 내용

캐나다에서는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과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을 통해 청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급 청산 및 결제법은 서문에서 금융회사 간 지급의무에 대한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은 금융시스템의 필수 요소이며 금융시스템에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캐나다 중앙은행의 역할 및 권한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은 캐나다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데

172) 高橋康文ほか・前掲注(165) 249頁

173) 동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자금청산업으로서 청산참가자로부터 인수, 경정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부담한 채무, 그 채무를 부담한 대가로서 해당 청산 참가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그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것에 한한다) 및 담보를 말한다.

174) 高橋康文ほか・前掲注(165) 249頁

그러한 조치에는 결제기능을 제공하고 최종 대부자로서 작동하며 청산 및 결제의무와 관련된 시스템에 동반되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한다.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 효율성과 안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청산 및 결제업무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된 지급 청산 및 결제법에서는 청산시스템 및 청산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권한 및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산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캐나다 지급결제법은 청산기관인 캐나다 지급결제협회(Canadian Payments Association)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로서 지급결제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규정한다. 또한 지급 청산 및 결제법이 중앙은행의 청산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데 반해 캐나다 지급결제법에서는 정부의 권한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2. 지급 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의 세부 내용

가. 청산시스템 및 청산기관에 관한 내용

(1) 청산결제시스템 및 청산기관의 정의

지급 청산 및 결제법 제2조에서는 “청산결제시스템”을 “지급채무의 청산 및 결제 또는 청산 및 결제를 위한 지급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 또는 협약으로서 최소한 세 당사자가 있고 그 중 최소한 하나는 캐나다의 참가기관, 최소한 하나는 청산기관이 위치한 관할권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기관이며 청산 및 결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캐나다 달러로 이루어지고 파생상품계약에서 유래된 지급채무를 제외하고는 결제가 캐나다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청산기관”은 동조에 따라 “청산결제시스템에 청산, 결제 또는 지급지시정보

를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협회, 제휴사, 대리인 그 밖의 기관”을 의미한다.

(2) 청산기관의 의무

청산기관은 후술할 중앙은행의 권한으로 감시대상 청산결제시스템으로 지정된 시스템에 관하여 지급 청산 및 결제법 제5조에 따라 중앙은행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정된 청산결제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스템의 설계 또는 운영, 시스템을 규율하는 내규, 계약, 규칙, 절차, 지침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청산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중앙은행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나아가 청산기관은 청산결제시스템의 시스템 리스크 보유 여부의 판단을 위해 중앙은행이 요청한 자료를 동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나. 중앙은행의 권한에 관한 내용

(1) 감시대상 청산결제시스템(Designated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의 지정 및 감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한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청산결제시스템을 지급 청산 및 결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동법에 따른 감시 및 규제를 받는 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지정된 청산결제시스템이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조직 구조, 청산기관의 관리 및 운영, 청산기관 또는 참가기관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행위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가

부적절하게 관리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기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청산기관이 시정조치를 준수할 수 없거나 캐나다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시스템 리스크가 부적절하게 관리될 것으로 판단되는 원인이 참가기관의 행위에 있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참가기관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앙은행 총재는 전술한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청산기관의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청산기관이 예정하고 있는 중대한 변화가 청산결제시스템, 청산기관, 참가기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조 제3항에 따라 그러한 변화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청산결제시스템 일반에 관한 권한

중앙은행은 지급 청산 및 결제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진다. 중앙은행은 특정 시스템 또는 계약이 청산결제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 동조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청산결제시스템이 시스템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동조 제3항에 따라 청산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차액결제 협약, 리스크 분담 및 관리 장치, 결제완결성의 보장, 청산기관의 재무 건전성, 중앙은행의 권한 실행 등과 관련하여 동법 제13.2조에 따라 청산기관, 참가기관 또는 양자 모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에 따라 법의 운영 및 집행을 위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중앙은행 또는 중앙은행 총재는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상급 법원에 청산기관 또는 참가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협약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그와 관련된 명령을 내리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청산기관의 회생에 관한 권한

지급 청산 및 결제법 1.1장에서는 캐나다에 소재하고 있는 지정 청산결제시스템의 회생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동법 제11.1조에 따라 중앙은행은 청산결제시스템 및 청산기관의 회생절차를 담당한다.

동법 제11.2조에서는 회생 담당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목표는 캐나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꾀하고 주요 청산결제시스템 기능의 지속성을 확보하며 공공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11.3조에 따라 중앙은행은 청산기관으로부터의 자산 획득, 청산기관 또는 참가기관 앞 대출 제공, 청산기관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하여 회생 담당기관으로서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급 청산 및 결제법 제7조에 따라 지정 청산결제시스템 및 청산기관에 대하여 참가기관에 의한 결제를 보증하거나 유동성을 제공하거나 참가기관에 대한 CCP로서 기능할 수 있다.

동법 제8조에서는 결제완결성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정 청산결제시스템의 결제규정은 동조 제1항 (a)에 따라 유효하며 청산기관, 참가기관 및 중앙은행을 구속한다. 동 조항 (b)에서는 참가기관에 대한 다른 참가기관 또는 청산기관의 채무 및 참가기관의 다른 참가기관 또는 청산기관에 대한 채권은 결제규정에 따라 차감 계산되어 결제금액이 산출되도록 하고 동 조항 (c)에서는 결제규정에 따라 처리된 지급은 취소, 재지급 또는 무효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3.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의 세부 내용

가. 청산기관에 관한 내용

(1) 청산 및 결제기관으로서의 지급결제협회

캐나다 지급결제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동법을 근거로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를 설립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1장은 지급결제협회에 관한 장으로서 지급결제협회의 회원 참가자격, 조직, 권한 및 의무 등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지급결제협회의 목표로 지급결제에서의 청산 및 결제를 위한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과 청산결제시스템 및 다른 관련 시스템 간 연계의 촉진을 들고 있는바, 지급결제협회는 동 목표 하에 청산기관이자 결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지급결제협회의 의무

청산결제기관으로서의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캐나다 지급결제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안전성 및 안정성을 증진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

지급결제협회는 후술할 재무부의 권한과 관련하여 동법 제19조 제4항 및 규정 제정 후 10일 이내에 규정 사본을 재무부에 송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동법 제19.4조에 따라 재무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나. 청산 및 결제업무의 운영에 관한 내용

지급결제협회의 이사회¹⁷⁵⁾는 캐나다 지급결제법 제18조 제1항 (d) 및

(e), 제19조 제1항 (a) 및 (c), 제19.1조에 따라 지급결제에서의 청산 및 결제와 관련하여 협회의 목표 달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규정 (by-law) 및 규칙(rule)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 제1항 (b)에 따라 규칙을 근거로 기준(standard)을 제정할 수 있다. 청산 및 결제업무는 동 규정, 규칙 및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지급결제협회는 청산 및 결제업무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동법 제21.2조 제1항 및 제21.4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자문위원회(stakeholder advisory council)와 회원 자문위원회(member advisory council)를 구성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자문위원회는 동법 제21.2조 제5항에 따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대표가 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 지급, 청산 및 결제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한다. 회원 자문위원회는 동법 제21.4조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제협회의 청산결제시스템의 운영과 청산결제시스템 및 다른 시스템 간 연계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한다.

다. 재무부의 권한에 관한 내용

(1) 규정 · 규칙 · 기준에 대한 승인

재무부는 지급결제협회의 규정, 규칙 및 기준에 대한 승인 및 제정 · 개정 · 폐지 명령 권한을 가진다. 지급결제협회의 규정은 캐나다 지급결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 규칙의 경우 동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 장관에게 사본이 송부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며 재무부 장관은 동조 제3항에 따라 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허할 수 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동법 제19.3조 제1항에 따라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175) 캐나다 지급결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캐나다 지급결제협회장, 캐나다 중앙은행에 당좌계정을 보유한 회원 중 3명, 그 밖의 회원 중 2명, 협회 및 회원으로부터 독립적인 7명의 총 13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경우 지급결제협회에 대하여 각종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동 명령에는 규정, 규칙 또는 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명령도 포함된다.

(2) 자료제출 요구

재무부는 캐나다 지급결제법 제19.4조에 따라 지급결제협회에 자료제출 요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3)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재무부는 캐나다 지급결제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캐나다 국내를 대상으로 금융시장과 경제에서의 거래를 지원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시 고려요소로는 동조 제2항에서 지급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과 경쟁력 그리고 금융시스템에서의 최선의 이익을 들고 있다.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하여 재무부는 동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규정에 대한 승인, 동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정 및 동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명령 발부 권한을 가진다.

다만, 지급결제시스템 지정과 관련된 장은 동법 제36.1조에 따라 지급결제협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지급결제협회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시스템에는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IV. 미국의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 연방예금보험공사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1. 주요 내용

미국의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8장에 해당하는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은 금융시스템의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 건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 인프라(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market utility)의 리스크 관리 및 금융회사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지급, 청산 및 결제업무(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ivity) 수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연방준비은행 이사회에 해당 업무의 리스크 관리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강화된 감독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제4장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절에서 차액결제 협약을 보호하는 조항을 마련해둠으로써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2.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의 세부 내용

가. 청산 및 청산기관에 관한 내용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 제803조에서는 청산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시장 인프라와 지급, 청산, 결제업무에 대하여 정의한다. 동조 제6항

에서는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하여 “금융회사 간 또는 금융회사와 개인 간 지급거래, 증권거래 등 금융거래의 지급, 청산, 결제의 목적으로 다자간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자”로 정의하여 청산기관을 금융시장 인프라에 포함하고 있다. 동조 제7항 (A)에서는 “지급, 청산 및 결제업무”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들에 의해 금융거래의 종결을 위해 수행되는 업무”로 정의하고 동 조항 (B)의 (i)를 통해 금융거래에 자금이체를 포함한다. 업무의 내용으로는 동 조항 (C)에서 당사자들 간의 미결제 금융거래의 계산 및 정보 전송, 거래의 차감정산, 거래, 계약 또는 상품정보의 제공 및 관리, 금융거래와 관련 업무 및 리스크의 관리, 지급지시의 전송 및 저장, 자금의 이전, 금융거래의 최종 결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미결제 금융거래액의 계산 및 정보 전송, 거래의 차감정산, 지급지시의 전송 및 저장은 청산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금융안정 감시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

(1)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 인프라 및 지급, 청산, 결제업무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market utilities and payment clearing, or settlement activities)의 지정

금융안정 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는 금융개혁법 제1장에 해당하는 금융안정법(Financial Stability Act) 제111조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¹⁷⁶⁾로서 동법 제112조에 따라 미국 내 금융안전성에 대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시장 규율을 강화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176) 동조 (b)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재무부장관, 미국 연방준비은행 의장, 소비자 금융보호국장,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연방예금보호공사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연방주택금융청장, 신용협동조합 관리기관 이사회장,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보험 전문가와 의결권이 없는 금융연구원 원장, 보험위원회의 위원, 은행 감독원의 감독관, 증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 제804조에서는 금융안정 감시위원회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 인프라 또는 지급, 청산, 결제업무의 지정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금융안정 감시위원회는 동조 (a)에 따라 지급, 청산, 결제업무를 통해 처리되는 거래금액의 규모, 다른 지급, 청산, 결제업무와의 연관성, 의존성 및 상호작용의 정도, 업무의 실패 또는 중단이 주요 시장, 금융회사 또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 인프라 또는 지급, 청산, 결제업무를 지정하게 된다.

(2) 자료제출 요구

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 제809조의 (a)에 따라 금융시장인프라와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지급, 청산, 결제업무가 시스템적 중요성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 제809조의 (b)에 따라 지정 금융시장 인프라 및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정보, 보고서 또는 기록을 제출요구 권한을 가진다. 지정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하여는 동조의 (b)(1)에 따라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전성 및 건전성과 그 운영이 금융시스템에 대하여 가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동조의 (b)(2)에서 지정 업무와 관련된 규칙, 명령, 기준이 그 업무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절히 다루는지와 금융회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칙과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 다만, 동조의 (c)(1)에 따라 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자료제출 대상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이전에 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연방준비은행의 권한에 관한 내용

(1) 지정 금융시장 인프라 및 지급, 청산, 결제업무에 대한 기준 제정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 제805조 (a)에 따라 연방준비은행 이사회는 금융안정 감시위원회 및 감독기관(supervisory agency)¹⁷⁷⁾과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 인프라와 지급, 청산, 결제업무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기준의 목적은 동조 (b)에 따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확실한 리스크 관리, 안전성과 건전성 촉진, 시스템 리스크 완화이다. 기준의 규율범위는 동조 (c)에서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절차, 증거금과 담보 요건, 참가기관의 채무 불이행 시 정책 및 절차, 청산 및 결제를 적시에 완결시킬 수 있는 능력, 지정된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자본금 또는 채무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2) 지정 금융시장 인프라 및 지급, 청산, 결제업무에 대한 검사

연방준비은행 이사회는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 제807조 및 제808조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 인프라 및 지급, 청산, 결제업무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다.

연방준비은행 이사회는 동법 제807조에 따라 감독기관을 통해 또는 직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검사 항목은 동조 (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 금융시장 인프라의 운영 및 리스크의 본질, 지정 금융시장 인프라가 다른 금융회사, 주요 시장 또는 보다 광범위한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금융 또는 운영리스크, 그러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정 금융시장 인프라의 자원과 능력, 지정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

177) 동법 제803조 제8항에 따라 연방 은행, 증권 또는 상품선물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주된 관할권을 가지는 연방 기관을 말한다.

전성과 건전성, 금융시장 인프라의 준법감시 여부이다. 감독기관은 동조의 (d)(1)에 따라 매년 연방준비은행 이사회와 감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연방준비은행 이사회는 (2)에 따라 언제든지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연방준비은행 이사회는 동조의 (e)(1)에 따라 이사회와 감독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독기관에게 지정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하여 리스크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2)에 따라 금융시장 인프라의 활동이 다른 금융회사, 주요 시장, 또는 보다 광범위한 금융시스템에 실질적인 손해를 미칠 리스크 발생이 임박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감독기관과의 협의 및 금융안정 감시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지정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정 지급, 청산,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는 동법 제808조에서 정하고 있다. 금융 규제기관(appropriate financial regulator)¹⁷⁸⁾은 동조 (a)에 따라 금융회사에 의한 지정된 업무의 본질 및 범위, 지정된 업무가 그 금융회사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금융 또는 운영리스크, 지정된 업무가 다른 금융회사, 주요 시장 또는 보다 광범위한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금융 또는 운영리스크, 그러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자원과 능력,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여부에 대한 검사권한을 가진다. 연방준비은행은 동조 (d)의 (1) 및 (2)와 동조 (e)의 (1)에 따라 금융 규제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자체적으로 연방준비은행 이사회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법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자료제출 요구

연방준비은행 이사회는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 제809조의 (b)에 따라 지정 금융시장 인프라 및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정보, 보고서 또는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동 조항은 금융

178) 동법 제80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개혁법상의 주요 금융 감독기관, 신용협동조합 관리기관, 연방준비은행 이사회를 말한다.

안정감시위원회와 연방준비은행 이사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 및 방법은 전술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동 조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권한과 동일하다.

3. 연방예금보험공사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의 세부 내용

연방예금보험공사법에서는 금융회사 양자간 또는 청산기관을 통한 차액결제협약의 법적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동법 제401조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간의 거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차액결제를 통하여 그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바, 금융회사 간의 차액결제 절차는 차액결제에 참가하는 금융회사의 파산과 같은 상황에서도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여 결제완결성 보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402조 제14항에서는 차액결제 협약(netting contract)에 대하여 “협약 당사자들 간의 현재 또는 장래의 지급채무를 차감처리하는 둘 이상의 금융회사 간 협약이며 청산기관의 규칙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동법 제403조에서는 양자간 차액결제 협약의 유효성을, 제404조에서는 청산기관을 통한 차액결제 협약의 유효성을 보장한다. 동법 제403조의 (a)에서는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금융회사 간 채권 및 채무는 차액결제협약에 따라 차감처리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동조의 (d)에서는 파산한 금융회사의 청산에 따른 지급채권은 유효하며, 동 채권 금액은 파산한 금융회사에게 차액결제협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한다. 같은 취지에서 동법 제404조의 (a)에서는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참가기관의 다른 참가기관 전체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청산기관의 차액결제협약에 따라 차액결제처리되어야 한다고 한다. 동조의 (d) 및 (e)에서는 파산한 참가기관에 대하여도 차액결제협약에 따른 절차가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동법 제405조에서는 법원, 행정기

관 등의 명령으로 차액결제협약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은 조항들을 통하여 지급결제에서 청산을 위한 차액결제협약의 유효성과 그 이행이 법적으로 보장되는바, 결제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V.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 지급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법(Payment Systems and Netting Act 1998)

1. 주요 내용

호주의 지급결제 청산과 관련된 법률로는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과 지급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법(Payment Systems and Netting Act 1998)이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호주 준비은행의 시스템 지정 및 감시 권한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법은 결제완결성을 포함하여 다자간 차액결제 협약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2.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의 세부 내용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에서는 호주 준비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권한에 관하여 규정한다. 동법 제7조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에 대하여 “자금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이체 시스템을 의미하며 시스템과 관련된 지급수단이나 절차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준비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시스템을 지정할 권한을

가진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의 의미는 동법 제8조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이 참가자들에 의해 이용되기에 재정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쟁력이 있고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향상을 야기하거나 증대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준비은행은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스템에의 참가자격에 관한 정책을 부과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들 간, 참가자들과 개인 간의 해당 시스템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할 권한과 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지시를 할 권한을 가진다.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에 대하여 준비은행은 제26조에 따라 해당 시스템과 참가자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지급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법(Payment Systems and Netting Act 1998)의 세부 내용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법에서는 다자간 차액결제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동법에서는 호주 준비은행에 의해 승인된 다자간 차액결제 협약(multilateral netting contract)에 대하여 결제완결성을 보장한다. 다자간 차액결제 협약이란 동법 제2조에 따라 다자간 차액결제 협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둘을 초과하고 상호 간의 의무가 차액결제 되는 근거가 되는 협약을 의미한다.

동법 제10조에서는 호주 준비은행에서 승인한 다자간 차액결제 협약의 법적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의 (a)에서는 다자간 차액결제협약이 헌법적 상황에서 체결된 경우(within commonwealth constitutional reach) 동 협약에 따라 채무가 해소되고 확정된 채무금액이 산출되어 그에 따른 차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헌법적 상황에서 체결된 경

우'에는 은행업의 과정에서 또는 은행업을 목적으로 또는 은행업과 관련되어 체결된 경우가 포함되므로 은행간 다자간 차액결제인 청산과 관련된 협약에 대하여도 동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된다. 또한 동 조항의 (b)에서는 협약에 따른 차액결제와 관련된 권리의 처분이나 권리에 대한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의 (a)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나아가 동 조항의 (c)에서는 어떠한 법률 하에서든 동 협약 당사자의 자산과 부채에는 동 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자에게 부담되는 차액에 관한 채무가 포함되고 협약에 따라 해소된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협약 당사자 일방에게 외부관리(external administration)¹⁷⁹⁾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외부관리 이전 또는 당일에 발생한 차액결제 협약 이행을 위한 조치들과 차액결제 협약에 따른 의무가 무효로 되지 않고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제완결성을 보장한다.

동법 제11조에서는 다자간 차액결제 협약에 대한 승인 신청절차를, 동법 제12조에서는 호주 준비은행의 승인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동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협약에 대한 승인 요건으로 협약이 승인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참가자가 외부관리에 들어가면 금융시스템의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협약에 따른 차액결제가 매 영업일 최소한 한번 이상 발생할 것, 협약을 규율하는 규칙이 협약에 대한 관리기관을 설립하고 당사자 일방이 외부 관리에 들어갈 경우 당사자가 동 관리기관에 게 가능한 신속하게 이를 통지하고 관리기관이 그 당사자를 협약에서 배

179) 동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2001년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상의 외부 관리 대상 법인이 된 경우, 관리대상인 파산한 개인이 된 경우, 특정인이 파산했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있어 타인이 그의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1959년 은행법(Banking Act 1959)·1973년 보험법(Insurance Act 1973)·1995년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95)에 따른 법정 관리자가 특정인의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 1959년 은행법·1973년 보험법·1995년 생명보험법에 따라 특정인이 재판상 관리에 들어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른 당사자가 파산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이 가능한 신속하게 이를 관리기관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것을 정하고 있다.

VI. 영국의 은행법(Banking Act 2009) · 결제완결성 보장규정(The 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Settlement Finality) Regulations 1999)

1. 주요 내용

영국의 지급결제 청산과 관련된 법률로는 은행법(Banking Act 2009)과 결제완결성 보장규정(The 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Settlement Finality) Regulations 1999)이 있다. 은행법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에 관한 재무부의 권한과 동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결제완결성 보장규정에서는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지시, 청산 및 결제의 과정이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여 결제완결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은행법(Banking Act 2009)의 세부 내용

영국의 은행법 ‘제5장 은행간 지급결제 시스템(Inter-Bank Payment Systems)’에서는 영국 재무부의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권한과 영란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르면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이란 “금융회사 간 자금의 이전을 실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다. 동법 제184조 제1항 및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는 영란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지정 시 시스템의 현재 또는 예상 처리 거래량 및 금액, 거래의 성격, 다른 시스템에 의하여 같은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간의 관계, 영란은행의 통화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영란은행은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하여 동법 제188조부터 제190조까지에 따라 시스템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업무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시스템 운영기관에 시스템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영란은행의 승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91조에 따라 특정 조치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시스템 운영에 있어 준수해야 할 표준을 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란은행은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이 영란은행이 정한 원칙, 업무기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198조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 수준이 영국의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나 신뢰도를 해치거나 영국의 산업 전반 또는 국가적 이익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 업무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영란은행은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하여 동법 제193조에 따른 조사 권한과 제20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다.

3. 결제완결성 규정(The Financial Markets and Insolvency (Settlement Finality) Regulations 1999)의 세부 내용

결제완결성 규정에서는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하여 파산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동 규정의 적용대상은 동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이다.

동 규정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는 청산기관과 차액결제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청산기관(clearing house)에 대하여는 “기관들 간 차액 포지션을 산출하고 지정된 시스템에서 CCP 또는 대리인으로 기능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차액결제(netting)에 대하여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서로 다른 채권 또는 채무들을 청산기관, CCP 또는 결제대

리인을 통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나의 차감된 청구로 변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동 규정 제14조 제1항에서는 지급지시,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 불이행 시 처리에 관한 협약(default arrangement) 및 지급지시에 따른 결제에 관한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의 규칙이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동 규정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결제 불이행 시 처리에 관한 협약에는 차액결제에 관한 협약도 포함된다. 또한 동 규정 제16조 제3항에서는 파산신청 또는 청산의 개시 이후의 재산 처분을 무효화하는 파산법 조항은 지급지시나 지급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재산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파산의 상황에서도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지시, 청산 및 결제가 무효화되지 않고 완결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VII. 소결

해외의 법률에서 청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청산, 청산기관 및 청산시스템에 대한 정의, 청산기관의 의무, 청산업무의 운영, 청산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법률에서 청산결제시스템 및 청산기관의 정의, 청산기관의 의무, 청산 및 결제업무의 운영, 중앙은행 및 채무부의 권한,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또한 자금청산업 및 자금청산기관의 정의, 자금청산기관의 업무, 자금청산기관의 의무, 금융청의 권한,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청산업무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연방 준비은행 및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호주 및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권한과 결제완결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은행법에서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결제완결성 보장에 관하여 정하고

청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법률이 아닌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바, 법제화 항목에 있어서 호주나 영국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청산업에 대한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청산업, 청산시스템 및 청산기관의 정의, 청산기관의 업무 및 의무, 한국은행 및 금융위원회의 권한,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과 그 구조 및 내용에 있어 유사성을 보인다.

청산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를 법률에 반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청의 감독권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반면, 호주의 경우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에서 호주 중앙은행의 감시 권한에 대하여 다룬다. 캐나다의 경우 중앙은행의 감시권한에 대하여는 지급 청산 및 결제법에서, 재무부의 감독권한에 대하여는 캐나다 지급결제법에서 각각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준비은행과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권한을, 영국의 경우 영란은행과 재무부의 권한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법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 한국은행의 감시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과 중앙은행의 감시권한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캐나다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청산기관의 업무 운영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청산기관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캐나다 지급결제법에서는 청산기관을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 전반에 대하여도 법률로써 규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업무별 규약에서 청산기관의 업무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고¹⁸⁰⁾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에서는 법률에서 지급결

180)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의 지침서인 「금융시장인프라 감독에 관한 기본방침」을 통하여 중요 지급결제인프라의 지정권한에 대하여 규정한다. (한국

제시스템 또는 청산결제시스템 지정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지급 청산 및 결제법에 따른 청산결제시스템 지정 제도와 캐나다 지급결제법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제도, 미국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 인프라 및 지급, 청산, 결제업무 지정 제도,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제도, 영국의 은행법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제도와 같은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통해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지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법률 체계에서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해외의 법제에서도 지급결제에서의 청산 및 결제업무에 있어서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법률을 통해 지급결제에서의 청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는 다수 존재하나 법제화 방식 및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해외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의 경우 청산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한국은행의 규정과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사항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은행, 앞의 자료(각주98), 69면)

제 4 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적 성격

제 1 절 문제의 소재

금융회사의 고객 간 지급거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는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는 자금을 수취하는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산의 과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다른 금융회사가 그 금융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차액이 산출되고 결제의 과정을 통하여 차액만큼이 이전됨으로써 그러한 채권 및 채무관계는 해소된다.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과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 간 차감의 과정을 거치는 청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등액에 있어 소멸시키는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바, 지급결제에서의 청산의 법적 성격을 논함에 있어서는 민법상 상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해보아야 한다. 특히 다자간 청산의 경우 채권 및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각 금융회사가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합계와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합계 간 차액을 산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제 2 절 민법상 상계의 개관

I. 민법상 상계의 의의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¹⁸¹⁾ 독자적인 채권 소멸원인이 된다.¹⁸²⁾ 대립하는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상계계약,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계하도록 하는 것을 상계의 예약이라고 한다.¹⁸³⁾

상계는 대립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을 각각 청구하고 이행받기보다는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고 남은 것만을 변제하면 되므로 노력이나 비용 면에서 절약이 되어 간소한 변제수단으로서 기능한다.¹⁸⁴⁾ 지급결제에서의 청산이 결제 횟수 및 결제자금 규모를 대폭 감소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상계와 유사한 방식을 취함으로써 차액만을 결제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II. 민법상 상계의 요건

1. 민법 제492조

채무자가 유효하게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상계적상이라고 한다.¹⁸⁵⁾ 상계로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¹⁸⁶⁾

181) 양창수/김재형, 「계약법」, 박영사, 2015.5, 335면

182) 양창수/김재형, 앞의 책, 335면

183) 양창수/김재형, 앞의 책, 335-336면

184) 양창수/김재형, 앞의 책, 336면

185) 양창수/김재형, 앞의 책, 337면

상계적상의 요건에 대하여는 민법 제492조에서 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한다. 동 조항을 바탕으로 상계적상의 요건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일 것이라는 의미에서 채권의 동종성, 쌍방이 서로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일 것이라는 의미에서 채권의 상호대립성, 채권의 이행기 도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성질의 채권이 아닐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채권의 동종성

채권의 동종성이란 상계를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같은 종류의 채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부의 내용이 동일한 종류이면 충분하고 각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수량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¹⁸⁷⁾

3. 채권의 상호대립성

채권의 상호대립성이란 상계를 하는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이 서로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계를 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 상계의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의 상호대립성 요건에 따라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를 하는 사람 자신이 피상계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며 수동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¹⁸⁸⁾ 즉, 양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에게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는 것이다.¹⁸⁹⁾

186) 양창수/김재형, 앞의 책, 337면

187) 양창수/김재형, 앞의 책, 338면

188) 양창수/김재형, 앞의 책, 338-339면

189) 김기환, “상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의 상호대립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계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대립성 요건에 대한 예외는 제3자가 타인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¹⁹⁰⁾

민법 제418조 제2항에서는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고 하여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434조에서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고 하여 주채무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보증인의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상호대립하는 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민법상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는 민법 제426조 제1항, 제445조 제1항 및 제45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426조 제1항 및 제445조 제1항에서는 각각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경우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이 그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451조 제2항에서는 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는 채권양도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항사유에는 상계할 수 있는 지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⁹¹⁾

한편, 서로 대립하는 각각의 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¹⁹²⁾ 다

53면

190) 김기환, 앞의 논문, 76면

191) 양창수/권영준,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5, 198면

192) 양창수/김재형, 앞의 책, 338면

만, 민법 제495조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4. 채권의 이행기 도래

원칙적으로 상계대상이 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해야 한다. 다만, 자동채권은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는 반면, 수동채권의 경우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그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가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¹⁹³⁾

5.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성질의 채권이 아닐 것

민법 제492조 제1항 단서에서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라 함은 채권이 현실적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그 채권을 성립시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¹⁹⁴⁾ 일방 당사자의 단독의사로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기대할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이다.¹⁹⁵⁾

그 밖에 당사자의 의사표시으로써 상계를 제한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¹⁹⁶⁾

193) 양창수/김재형, 앞의 책, 339면

194) 양창수/김재형, 앞의 책, 340면

195) 박종미, “제3자의 상계권 행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6.8, 9면

196)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민법 제496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민법 제497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민법 제498조) 등과 같은 것이다. (김용덕, 「주석민법 채권총칙」,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5, 512면)

Ⅲ. 민법상 상계의 효과

상계는 민법 제493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의사표시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 3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민법상 상계 해당 여부

I. 채권의 동종성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참가하는 각 금융회사는 고객 간 거래의 결과로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고객 간 거래에 따른 자금을 이전받을 채권을 가지게 되는 한편 다른 금융회사에 자금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청산 및 결제의 과정을 통해 해소하게 된다. 각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모두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으로 채권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II. 채권의 상호대립성

1. 양자간 청산의 경우

두 개의 금융회사 간 지급거래에 있어 금융회사는 자신의 고객이 상대방 금융회사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경우 상대방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자신의 고객이 상대방 금융회사의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한 경우 상대방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양자간 청산에서는 금융

회사의 상대방 금융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의 금액 합계와 상대방 금융회사의 그 금융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의 금액 합계를 서로 차감하여 차액을 산출한다.

양 금융회사 쌍방이 서로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채권의 상호대립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다자간 대리인 청산의 경우

가. 문제의 소재

다자간 청산에서는 금융회사가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채권의 금액 합계와 그 금융회사가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채무의 금액 합계를 차감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대리인 청산 방식을 취하게 될 경우 청산기관이 거래 당사자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 및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또한 각 거래의 양 당사자 간 채권금액과 채무금액의 차액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의 채권금액의 합계와 채무금액의 합계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민법상 상계의 요건으로서의 채권의 상호대립성을 인정하여 서로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상계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지급결제 청산에서 채권의 상호대립성 인정여부에 관한 영국 판결([1975] 1 WLR 758)

(1) 사실관계

상고인은 British Eagle이고 피상고인은 Air France이며 모두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회

원들이었다.

1945년 캐나다 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설립목적 중 하나는 국제선 항공사들 간 협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국제선 항공사들은 운항 경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항공사들이 운항하는 티켓을 발권 및 판매하는 환승선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회원들이 그와 같은 화물 및 승객 운송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 금액의 결제를 위하여 1946년에 청산기관을 설립하였다.

British Eagle과 Air France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규정, 규칙 또는 지침의 구속을 받으며 자신들과 국제항공운송협회 및 다른 회원들 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건 하에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회원이 되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참가 신청을 할 때 신청인은 청산기관의 규정에 동의해야 하고 신청 당시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규정 및 이후 개정 규정, 그에 따른 모든 규칙과 지침은 청산기관의 존속기간 동안 신청인과 국제항공운송협회 및 모든 다른 회원 간 계약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British Eagle과 Air France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회원으로서 환승선 사업을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왔다.

국제선 항공사들 간의 협업 시스템은 여정의 일부가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에 의해 운항되었다고 승객이 하나의 항공사로부터 목적지까지의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항공사들 간의 협업이 있어야만 수행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를 고려한 계약이 존재하였다. 항공편 교환을 희망하는 항공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에 환승선 계약의 당사자가 되겠다고 신청하게 되고 계약에 대한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 또는 반대가 통지되었다. 계약의 당사자가 된 항공사는 모든 다른 당사자들과 함께 환승선 계약의 조건에 구속되고 이를 준수해야 했다.

이와 같은 환승선 계약에 따른 환승선 사업에서는 발권 항공사가 승객들로부터 전체 경로의 전체 금액에 대한 지급을 받은 후 적절한 금액

을 일부 경로를 운항한 항공사에게 지급해야 했는데 이를 개별적으로 처리한다면 굉장히 많은 횡수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많은 비용이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어야 하므로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청산기관을 설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청산시스템은 월마다 회원 상호 간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의 청산이 청산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청산에 따른 금액은 회원이 청산기관에게 지급하거나 청산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뿐 회원들 사이에서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청산기관을 통해서만 결제되는 시스템이었다. 회원들은 청산기관에 개별 거래를 통지하고 청산기관은 정기적으로 그들 사이의 거래를 대차대조하며 그 결과 채무 상태에 있는 회원들은 청산기관에 그 채무금액을 지급하고 청산기관은 채권 상태에 있는 회원들에게 채권금액을 지급하였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환승선 사업을 수행하는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승선 계약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제공하였다. 표준 계약의 조건 중 하나는 환승선 결제에 관련되어 있었다. 동 계약 제4조 제1항에서는 “각각의 발권 항공사는 각각의 운송 항공사에게 그가 수행한 운송에 대하여 운송료를 지급하는 데 합의한다” 라는 일반 조항을 두고 동조 제2항에서 그 합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결제와 관하여 정하였다. 결제방식은 양 당사자가 국제항공운송협회 청산기관의 회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환승선 계약의 당사자 중 일부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동 계약 동조 제2항 (b)에 따라 결제는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당사자들이 회원이라면 동 조항 (a)에 따라 “청산기관의 회원인 당사자들 간 지급금액의 결제는 청산기관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했다.

청산기관 규정 제18조의 (b)에서는 “청산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채권 및 채무와 관련된 양 당사자 사이의 모든 계약적 합의 또는 협약의 명백한 조건은 그 채권 및 채무의 금액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청산기관에 의해 지급되거나 수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회원들은 서로에게 직접 운송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었고 청산기관의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차액만을 청산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에 따라 청산기관은 회원이 다른 회원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청구한 월 합계금액과 다른 회원들이 그 회원에게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청구한 월 합계금액을 차감하는 차액결제 방식으로 매월 청산을 처리함으로써 각 회원이 청산기관에 지급하거나 수취할 단일의 금액만이 존재하도록 하였다.

청산은 월 단위로 실행되고 절차가 정교하게 정해져 있었다. 청산을 위한 거래 집계는 거래가 일어난 월의 익월 말에 마감되었다. 항공사는 서비스를 상호 제공한 상대방 항공사의 목록과 그 항공사들에 대한 청구 금액에 관한 자료를 청산기관으로 송부하였다. 청산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거래집계 마감 후 5영업일 이내에 각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하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액을 확정하여 청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규정 제15조에 따라 청산의 완료 즉시 또는 청산이 실행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전문으로 회원들에게 회원들이 청산기관에 지급하거나 청산기관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통지해야 했다. 전문의 발송 후 3영업일 이내에 청산기관은 각 회원에게 전문상의 금액이 산출근거가 되는 회원의 대변(회원의 청구금액), 차변(회원에게 대한 청구금액), 해당 월에 지급하거나 수취해야 하는 차액이 포함된 자료를 전송하였다. 청산의 결과 채무 상태에 있는 회원들은 그들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청산기관의 전문 송신 후 7일인 채무자 결제일까지 청산기관에 지급해야 하고 청산기관은 채무자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 상태인 회원들에게 그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했다.

청산기관 규정 제17조에서는 청산기관의 회원들에 대한 책임은 그들을 대신하여 청산의 채무자들로부터 수취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만약에 청산결과 채무상태인 회원이 결제일까지 채무금액을 지급하는 데 실패한다면 해당 회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야 했던 회원은 청산기관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였다. 또한 청산기관 매뉴얼에서는 결제를 불이행한 회원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과 관련된 청산은 반복되어 해당 회원은 다음 청산에서 채무금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청산기관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상태로 남게 되며 해당 금액이 지급되면

청산기관은 이를 수취하여 해당 회원에 대한 채권자 회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British Eagle은 1968년 11월 6일부터 거래를 중단하였고 11월 8일에 채권자들의 파산 결의에 따라 파산에 들어갔다. British Eagle이 파산에 들어간 시점의 포지션은 다음과 같았다. 9월동안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집계 마감일은 10월 30일이었고 결제일은 11월 12일이었는데 British Eagle은 53개의 항공사에 대하여 71,796파운드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였고 Air France를 포함하여 14개 항공사들은 British Eagle에 대하여 27,025파운드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1월 5일에 청산기관은 British Eagle에게 대차대조 결과 합계 44,771파운드에 대한 채무자라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그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다. 10월 1일부터 사업을 중단한 11월 6일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British Eagle은 대차대조결과 채무상태였다. 9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British Eagle의 채무는 174,455 파운드였고 채권은 27,337 파운드였다. Air France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Air France가 British Eagle에 대하여 9월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1,990 파운드 3실링 6펜스의 채무를,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5,934파운드 17실링 9펜스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한편, 1948년 회사법(Companies Act 1948) 제302조에서는 “회사의 재산은 파산 과정에서 그의 채무를 균등하게 만족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회사에 관한 권리와 이익에 따라 사원들 사이에 분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당사자의 청구 및 주장내용

British Eagle은 1969년 10월 31일 Air France를 상대로 9월부터 11월 6일까지 British Eagle이 Air France에게 제공한 서비스 대금과 Air France가 British Eagle에게 제공한 서비스 대금 간 차액인 7,925 파운드 1실링 3펜스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British Eagle의 파산관재인은 청산기관 규정이 8월 이후의 영업과 관련해서는 그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9월 1일과 11월 6일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British Eagle에 대하여 채무상대인 Air France 및 다른 항공사들은 해당 금액이 British Eagle의 채권자들 사이에 분배 대상이 되는 일반 자산의 일부로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British Eagle에게 채무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British Eagle에 대하여 채권 상태인 항공사들은 파산 절차에서 일반적인 무담보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채권금액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산관재인은 1948년 회사법의 제302조를 근거로 British Eagle의 10월 1일과 11월 6일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채권 및 채무는 실질적으로는 British Eagle의 채권 및 채무이므로 청산기관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British Eagle에게 부담되는 채무를 모든 채권자의 일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산기관의 채권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는 동 조항에 따른 원칙을 침해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파산자의 재산을 파산 법제의 원칙에 어긋나도록 분배하게끔 하는 계약 조항은 법원에 의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청산기관은 반대로 British Eagle이 11월 6일까지 수행한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청산기관 규정이 파산관재인을 구속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British Eagle에게 항공사들이 부담하는 채무금액은 British Eagle이 항공사들에게 가지는 채권금액으로부터의 차감에 적용되어야 하며 청산기관은 파산 절차에서 그 차액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ir France는 청산기관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Air France는 청산기관 규정이 파산관재인을 구속하기 때문에 Air France가 British Eagle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금액은 없으며, 어떠한상황에서도 파산관재인은 9월 거래에 대한 채권금액인 1,990파운드 3실링 6펜스의 금액을 회복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 금액은 파산 결의가 통과하기 전에 거래 집계가 마감된 9월의 청산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948년 회사법 제302조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Air France는 환승선

계약과 청산기관 규정은 회원과 국제항공운송협회 간 선의의 계약을 구성하고 청산 채권자들이 동 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우선지급에 관한 권리가 1948년 회사법의 제302조를 위배하는 사기적인 우선권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계약은 British Eagle이 파산에 들어가기 전에 British Eagle을 구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British Eagle의 파산관재인을 구속한다고 하였다.

한편, British Eagle은 청산기관 규정에 따른 재산 분배의 파산 법제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Ex Parte Mackay (1873) 8 Ch App 643 사건을 인용하였는바, 해당 사건의 주된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A는 B에게 특허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동시에 B는 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그 금전채무의 충당을 위해 사용료 지급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B가 사용료의 1/2은 A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A가 파산할 경우 B는 사용료 전액을 보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이후 A는 파산하였고 해당 판결에서는 B는 오직 사용료의 1/2에 대해서만 선회권이 있고 그가 A의 파산 시 사용료 전체를 보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법이 규정하는 것과 다르게 특정 채권자와의 약정에 의해 파산자의 동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판시되었다.

Air France는 해당 판결은 본 사안과 매우 다른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Mackay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계약 조항은 파산 시 파산자의 재산상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조항으로 파산일까지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파산자의 재산에 동 조항에 따라 파산 시 일반 채권자를 해하고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담보가 설정되었으나, 본 사안에서는 파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Air France는 청산기관 규정이 파산일 전과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되었고 청산기관 채권자에게 부여된 우선권은 파산에 의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에 Mackay 사건에서의 1/2 사용료에 대한 청구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3) 소송 진행경과

1심 법원은 British Eagle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법원도 1심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1심 법원에서는 이 소송절차의 당사자들에게 적용된 청산기관 규정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따라 British Eagle은 British Eagle이 Air France나 다른 회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이 Air France나 다른 회원이 British Eagle에게 부담하는 채무금액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서 대변으로 포함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에서는 “British Eagle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청구를 청산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Air France에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청산기관의 모든 다른 회원 및 국제항공운송협회와 체결하였기 때문에 Air France에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동 계약이 파산법의 원칙을 상당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파산법의 원칙은 파산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재산은 그의 무담보 채권자들 간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의 쟁점은 Air France에 대한 British Eagle의 청구금액이 British Eagle의 재산인지 여부이며, 본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British Eagle이 청산 결과 채권상태였다고 가정해보면 British Eagle의 재산은 개별 항공사들에 대한 채권금액의 합계가 아니라 채권금액에서 다른 개별 항공사들로부터의 서비스에 따른 채무금액을 청산을 통해 차감한 금액이다” 라고 실시하였다.

British Eagle은 영국의 대법원인 상원(House of Lords)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인용하였다. 다만, 2인의 기각 의견이 있었다.

(4) 쟁점

본 사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청산기관을 통해서만 회원 간 서비스 대금의 지급 및 수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청산기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British Eagle과 Air France 간에 채권 및 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산기관 규정이 파산 시에도 효력이 발생하여 청산기관의 채권자가 파산자의 재산으로부터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파산법제의 일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5) 대법원(상원) 판결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환승선 표준계약 제4조의 취지는 당사자들이 청산기관의 회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권 항공사는 운송 항공사에게 그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양 당사자가 청산기관의 회원이고 그들이 발권 항공사에게 운송 항공사가 직접 지급한다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산기관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British Eagle이 Air France에 대하여 서비스 대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청산기관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ir France가 British Eagle에게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British Eagle이 청산기관을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Air France가 British Eagle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British Eagle이 가지는 권리는 Air France가 British Eagle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회원 일방의 파산 시에도 청산기관 채권자에게는 청산기관 규정에 따라 우선 지급받을 권리가 부여된다는 Air France의 주장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환승선 계약은 회원 상호 간에는 채권금액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도록 의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청산기관 채권자들이 British Eagle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다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수의견은 청산기관 채권자들은 담보가 있는 채권자들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Air France의 주장은 그들이 파산에서 보통의 무담보 채권자들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청산기관 계약에 의하여 담보가 있는 채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청산기관 계약의 당사자들이 채무가 특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계약에 합의함으로써 무담보 채무를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1948년 회사법 제302조에 반하는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다수의견은 청산기관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선의의 사업상 이유가 있고 계약이 하나 이상의 당사자의 파산과 관련하여 파산법제에 반하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Air Franc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한 계약은 1948년 회사법 제302조에 반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파산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수의견은 청산기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British Eagle은 1968년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항공사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항공사들로부터 서비스 대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고 British Eagle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항공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자신들이 British Eagle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서비스 대금의 금액을 파산 절차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의 기간¹⁹⁷⁾에 대한 British Eagle의 상고를 인용하였다.

(6) 대법원(상원) 판결 반대의견

반대의견은 다수의견과 달리 British Eagle과 Air France 간에는 채권 및 채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대의견은 청산기관 규정에 따라 청산기관의 모든 회원들은 서비스 대금에 대한 청구를 상호 간에 하지 않고 오직 청산기관을 통해서만 지급 또는 수취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회원들 상호 간에는 어떠한 금액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산기관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청산기관이 환승선 계약에 따른 채무금액을 수취하고 채권자인 회원에게

197) 9월에 제공된 서비스 대금에 관한 청산은 파산 결의가 통과되기 전인 11월 4일(거래 집계 마감일로부터 5일에 해당한다)에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기간에 관한 청구는 인용되지 않았다.

이를 지급하는 단순한 대리인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British Eagle이 파산절차로 들어갔을 때 British Eagle의 재산에는 Air France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고 청산의 결과 채권자의 입장인 경우 청산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만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청산기관 계약의 파산법제의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해서도 반대의견은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대의견은 청산기관 계약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관점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며 Mackay 사건에서와 달리 파산의 상황에서 재산을 전용하거나 변화를 초래하는 등 파산법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청산기관 계약을 변경하거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British Eagle이 파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권리 이상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British Eagle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7) 평가

국제항공운송협회 청산기관의 청산방식은 다자간 청산이자 대리인 청산이라고 할 수 있다. 청산기관은 참가 회원들의 다른 회원들에 대한 채권금액과 다른 회원들의 그 회원에 대한 채무금액의 합계 간 차액을 산출하고 이를 통지하여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청산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CCP 청산에서처럼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결제 불이행에 따른 청산기관의 책임에 관하여 청산기관 규정 제17조 및 매뉴얼에서 청산기관은 회원들에 대하여 청산 결과 채무상태인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한정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회원의 결제 불이행 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영국 대법원의 반대의견은 회원들이 청산기관에 대해서만 채권을 보유하고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이유로 청산기관이 대리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규정 제18조 (b)의 취지는 회원들

간 채권 및 채무관계의 해소를 청산기관의 청산 및 결제의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한 것일 뿐 청산기관이 CCP 청산에서처럼 거래 당사자가 되어 회원의 채무를 직접 인수하거나 회원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청산기관의 청산 방식은 다자간 청산이자 대리인 청산이라고 볼 수 있다.

British Eagle의 청구와 관련된 기간 동안 British Eagle은 다른 모든 회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자간 청산에 따른 차감 결과 채무상태에 있었으나 Air France와의 양자간 관계만 놓고 보면 채권자의 입장에 있었고 British Eagle은 본 소송을 통해 Air France와의 양자간 관계에 있어서의 채권금액을 청구한 것이다. British Eagle의 청구의 인용 가능여부와 관련된 주된 쟁점은 British Eagle과 Air France 간 채권 및 채무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며 이는 곧 British Eagle의 청구에 대하여 Air France가 다자간 청산의 효력을 주장하여 British Eagle에게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즉 다자간 청산에 따른 상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British Eagle과 Air France 간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하였다. 다수의견은 환승선 계약의 취지는 당사자들이 청산기관의 회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권 항공사는 운송 항공사에게 그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양 당사자가 청산기관의 회원이고 그들이 발권 항공사가 운송 항공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합의하지 않았다면 청산기관 시스템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아 발권 항공사가 운송 항공사에게 채무를 부담하되 청산기관의 청산 및 결제를 통해 채권 및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취지에서 다수 의견은 Air France가 British Eagle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으며 British Eagle이 Air France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채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수의견에 따르게 될 경우 채권 및 채무관계는 British Eagle과 Air France 간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British Eagle의 그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Air France가 다자간 청산에 따른 상

계의 효력을 이유로 지급할 금액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회원들의 British Eagle에 대한 채권과 British Eagle의 Air France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채권의 상호대립성이 인정될 수 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다.¹⁹⁸⁾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회원들 상호 간에는 채권 및 채무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청산기관에 대한 채권 및 채무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에 따를 경우 Air France는 British Eagle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으므로 British Eagle의 청구에 대하여 다자간 청산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반대의견의 견해는 청산기관의 청산 방식을 CCP 방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본 사안의 청산 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리인 청산에 해당하므로 청산기관은 회원 간 채권 및 채무관계에 대한 청산의 결과 채무상태에 있는 회원으로부터 수취한 대금을 채권상태에 있는 회원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회원 간 채권 및 채무관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본 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다자간 대리인 청산은 상계의 요건으로서의 채권의 상호대립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는 규정 개정을 통해 “청산기관을 통하여 청산이 이루어지는 회원들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회원들 상호 간 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고 대신에 청산기관에 대하여 청산에 따라 차감된 채무를 지급하고 청산기관에게 청산기관이 채무 상태의 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한편 “본 규정을 통한 청산의 대상 거래는 당사자들 상호간의 채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¹⁹⁹⁾ 개정된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파산한 호주의 Ansett 항공 간 소송에서 호주 대법원은 청산기관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운송협회 회원들 간에는 채권 및 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오직 청산기관과 회원들 간에만 채권 및 채무관계가 발생된다고 보았으며 청산기관 규정이 파산법제를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익에

198) Michael Bridge, “Clearing houses and insolvency”, Law and Financial Markets Review, Volume 2 - Issue 5, Routledge, p.419

199) Michael Bridge, *Ibid.*, p.420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²⁰⁰⁾

다. 검토

전술한 영국 판결을 통하여 다자간 대리인 청산에서 채권 및 채무관계는 청산대상이 되는 개별 거래의 당사자 간 존재하므로 다자간 대리인 청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청산은 채권의 상호대립성이 인정될 수 없어 상계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러한 영국 판결의 태도는 우리 민법상 상계의 요건으로서 채권의 상호대립성 인정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 민법상 상계의 요건은 쌍방 당사자 간 채권 및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 당사자의 상황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상계의 요건으로서의 채권의 상호대립성이란 상계를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자간 대리인 청산에서 청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청산대상이 되는 각 거래별 양 당사자 간 서로에 대한 채권 금액을 대등액에서 소멸시켜 차액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에 참가하는 각 금융회사별로 나머지 전체 금융회사들에 대한 채권 금액과 나머지 금융회사들의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금액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으로 서로 대립하는 채권 간 상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양자간 상계와 법적 성격이 상이한 다자간 청산을 양자간 상계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도 없을 것이다.²⁰¹⁾

민법상 제3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또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상계를 하려는 자와 제3자가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로 청산에서와 같이 참가 금융회사가 동일한 청산

200)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v Ansett Australia Holdings Ltd.*
[2008] HCA 3

201) 한국은행, 앞의 자료(각주133), 7면

시스템에 참여하며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법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다자간 CCP 청산의 경우

CCP 청산의 경우 대리인 청산에서와 달리 청산기관이 거래에 직접 개입하게 된다. 이 경우 채권 및 채무관계는 청산에 참가하는 각 금융회사와 청산기관 간 존재하게 된다.

CCP가 채권 및 채무관계를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는 경개, 면책적 채무인수 및 거래당사자 방식이 있다.²⁰²⁾ 경개의 방식에서는 기존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CCP와 참가 금융회사 간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어 존속하게 된다.²⁰³⁾ 면책적 채무인수의 방식에서는 참가 금융회사가 부담한 채무를 CCP가 인수하고 그 대가로 반대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²⁰⁴⁾ 거래당사자 방식에서는 CCP가 직접 각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²⁰⁵⁾

다자간 CCP 청산에서는 CCP의 개입으로 인해 모든 거래가 상호화되기 때문에 채권의 상호대립성이 인정될 수 있다.

Ⅲ. 채권의 이행기 도래

청산에 참가하는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간 채권 및 채무관계를 청산의 과정을 거쳐 차액결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에 동의하고 참가하게 되며, 청산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 차액에 대한 결제는 청산기관의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 일자 및 시각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채권의 이행기는 결제일에 도래하게 된다.

202)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675면

203)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676면

204)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676면

205) 김건식/정순섭, 앞의 책, 676면

IV. 소결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방식 중 다자간 대리인 청산의 경우에는 채권의 상호대립성이 부정되어 민법상 상계에 해당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양자간 청산 및 다자간 CCP 청산의 경우 민법상 상계의 요건 중 채권의 동종성 및 채권의 상호대립성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이행기 도래 요건과 관련해서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아직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장래의 일정한 시기인 결제일에 상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상계의 예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 5 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

제 1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 필요성

I.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금융법적 의의의 측면

일상적인 경제생활에 있어 지급결제제도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스템의 이면에 깊숙이 자리하며 금융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⁰⁶⁾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 금융회사, 기업, 개인 등 경제주체의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²⁰⁷⁾ 따라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²⁰⁸⁾ 지급결제 인프라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안전성 및 효율성을 중심적인 구성원리로 고려하게 된다.

지급결제에서 청산은 지급결제의 시작점인 지급지시가 금융회사 간 실제 자금을 주고받는 결제로 종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금융회사 간 채권 및 채무를 확정하여 결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²⁰⁹⁾ 청산은 다수의 금융회사 간에 채권 및 채무를 차감 및 정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간 자금을 이전하는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결제자금의 유동성을 절감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한다.²¹⁰⁾

그러나 지급결제에서 청산 및 그를 기반으로 한 결제의 실패는 경제주체가 기대했던 자금의 흐름에 광범위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거대한

206) John Armour *et al.*, *op.cit.*, p.390

207) John Armour *et al.*, *op.cit.*, p.390

208) John Armour *et al.*, *op.cit.*, p.390

209) 금융결제원, 앞의 책(각주4), 19면

210) 금융결제원, 앞의 책(각주4), 20면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²¹¹⁾ 최종적인 결제가 청산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청산에 참가하는 금융회사는 결제 시점 이전에 그들이 자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²¹²⁾ 또한 시스템적 관점에서 하나의 금융회사가 그의 결제의무를 이행하는데 실패하게 될 경우 다른 금융회사들이 연달아 결제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리스크를 가져와 일련의 연쇄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²¹³⁾ 이러한 청산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결제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결제 불이행 시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처럼 지급결제에서 청산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인 동시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항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 인프라로서 청산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와도 직결되어 있다. 지급결제 청산의 법제화는 금융법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II.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독립적 기능의 측면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 논의는 기능적 관점에서 청산을 독립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²¹⁴⁾ 청산의 기능적 독립성과 관련하여 청산은 결제를 위한 부수적 행위일 뿐 법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지 않으며 결제와 기능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산은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적인 측면에서 금융회사 간 채권 및 채무관계를 확정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채권 및 채무관계를 최종적으로 해소하는 결제와 기능을 달리 한다. 또한 청산은 은행 간 자금이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

211) John Armour *et al.*, *op.cit.*, pp.395-396

212) John Armour *et al.*, *op.cit.*, p.396

213) John Armour *et al.*, *op.cit.*, p.396

214) 국회사무처, 앞의 자료, 6면

성된 기능이며, 국내에서와 같이 청산기관과 중앙은행이 청산과 결제의 기능을 분담하여 각각 수행하고 있는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²¹⁵⁾

청산과 결제가 기능적으로 분리된다는 관점은 청산에 대한 법제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례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청산 및 결제기능의 정비에 관한 증권선물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2006년 합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은 2006년 8월 31일 ‘거래소·예탁결제원 청산 결제기능 및 소유구조 개편 합의’를 통해 청산과 결제의 업무범위 및 수행주체를 명확히 하였다. 당시 합의문에 따르면 청산업무의 범위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 및 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처리 및 결제청구”이고 결제업무의 범위는 “증권의 거래에 따른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및 결제이행과 불이행 결과의 통지”로 구분된다.²¹⁶⁾ 동 합의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소시장의 청산업무를, 증권예탁결제원은 거래소시장의 결제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기로 하였다.²¹⁷⁾

지급결제에서의 청산과 자본시장에서의 청산은 각각 대리인 청산과 CCP 청산으로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나 청산업무의 본질인 거래 확인 및 결제금액의 확정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바, 지급결제에서의 청산도 자본시장에서의 청산과 마찬가지로 결제업무와 법적으로 분리된 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급결제에서의 청산은 청산대상 거래의 확인, 지급지시 중계, 청산대상 거래에 따른 채권 및 채무의 차감, 결제금액의 확정 및 결제청구로, 결제는 결제대금 지급, 결제결과의 통지로 그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처럼 지급결제에서 청산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며 결제와 그 업무범위가 구분되는바, 청산에 관하여 법제화를 하는 것은 업무범위

215) 호주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협회, 일본의 중앙은행과 Zengin-net 등이 그 예시이다.

216) 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 앞의 자료, 6면

217) 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 앞의 자료, 6면

를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청산업무의 전문적, 안정적 수행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Ⅲ. 지급결제의 결제완결성 보장의 측면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제화가 필요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이유는 결제완결성 보장의 측면에서 도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및 제336조에서는 지급결제제도 참가자의 회생 또는 파산 시에도 결제완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동 조항에서는 결제완결성 보장대상으로 지정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그 참가자에 관련된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이 법’이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금융결제원의 업무별 규약 등에서 정한 바를 의미한다. 또한 청산의 주요 기능인 이체지시, 정산, 차감을 동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청산의 효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일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특칙에 의해 결제완결성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다자간 대리인 청산의 경우 민법상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특칙을 근거로 청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부터 제421조까지에서는 파산의 상황에서도 보호될 수 있는 상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다만, 동 법에서는 상계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및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계의 정의 및 요건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동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상계는 민법에 따른 양자간 상계에 한정되어 다자간 청산은 해당 조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²¹⁸⁾

또한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특칙인 동법 제120조 제1항 및 제336조에 서도 회생 또는 파산의 상황에서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만을 배제하고 있을 뿐 민법의 적용까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동 특칙에 의하더라도 다자간 대리인 청산의 경우 민법상 상계의 요건인 채권의 상호대립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여전히 민법상 상계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특칙이 존재하더라도 다자간 대리인 청산은 민법상 상계로서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청산 구조 자체가 무효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특히 청산에 참가하는 금융회사의 회생 또는 파산의 상황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따라서 지급결제에서 청산구조의 법적 유효성 및 결제완결성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급결제 청산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 2 절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 방안

I. 법제화 필요사항

국내 법제에서 지급결제 청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과 금융결제원의 업무별 규약에서 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과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은 법률은 아니지만 사법적 관계에 있어 지급결제제도 참가자를 법적으로 구속한다. 따라서 현재에도 지급결제에서 청산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법률에 의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 법적 구속력 있는 기반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218) 한국은행, 앞의 자료(각주 133), 7면

같이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과 독립적 기능으로서의 청산업무의 전문적, 안정적 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특히 결제완결성 보장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 항목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해외의 입법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청산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항들에 대하여 모두 법률로써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제완결성 보장의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의 법제에는 다자간 대리인 청산의 구조 자체가 무효화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 기능으로서의 청산의 법적 유효성 및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결제에서의 청산이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의하고 청산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법상 상계의 요건 결여로 인해 다자간 대리인 청산의 법적 구조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결제완결성 보장에 관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II. 청산의 법적 정의 및 청산기관의 법적 지위

청산의 법적 정의는 ‘지급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를 차감하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여 그 결제를 지시하는 것’으로, 그 업무범위는 ‘청산대상 거래의 확인, 지급지시 중계, 청산대상 거래에 따른 채권 및 채무의 차감, 결제금액의 확정 및 결제청구’로 정해볼 수 있다. 또한 청산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그 책임 및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산기관 업무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²¹⁹⁾

법제화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법률인 한국은행법 또는 전자금융

219)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체계와 최근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상사법연구 제39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20, 313면

거래법을 개정하거나 일반법의 성격을 지니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할 것이다. 지급결제에 대한 분산적 규제 체계는 이용자 보호와 법률관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새로운 지급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 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²²⁰⁾ 다만, 현행 법제하에서 청산의 법적 유효성 및 결제완결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인 반면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반영하고 이후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될 경우 동법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III. 결제완결성 보장

청산의 법적 유효성을 확보하고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특칙의 내용을 보완하여 동법 제120조 제1항에 동법 뿐만 아니라 ‘민법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이 우선 적용되도록 명시함으로써 다자간 대리인 청산이 민법상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동 조항에 따라 회생 또는 파산의 상황에서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지급결제에서의 청산도 자본시장에서의 청산과 마찬가지로 대리인 방식이 아닌 CCP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CCP 방식을 취하게 될 경우 CCP의 개입으로 모든 청산대상 거래가 상호화됨으로써 민법상 상계의 채권의 상호대립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없이도 청산 구조의 유효성을 보장하고 법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결제리스크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도 제1장의 해외 청산업무 처리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CCP 방식의 청산을 택하는 국가와 대리인 청

220) 정순섭, “비현금지급수단의 발전과 지급결제법제”, BFL 제9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0.1, 14면

산의 방식을 택하는 국가 간 청산에 따른 결제리스크 관리수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바, 현행 결제리스크 관리수단에 더불어 CCP 방식으로 청산을 처리하게 될 경우 그 자체로 강화된 결제리스크 관리수단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한편, CCP 방식으로 지급결제에서의 청산을 재구성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청산대리인으로서 기능해오던 금융결제원에 CCP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제 6 장 결론

이상에서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적 성격 및 법제화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2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개요’에서는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정의, 등장배경, 유형, 처리절차, 효과 및 결제리스크 관리수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급결제에서 청산은 지급지시에 따른 거래가 처리되도록 금융회사 간 지급지시 정보를 중계하고 거래를 대사 및 확인하며 채권 및 채무금액에 대한 차감을 통해 최종 결제금액 및 포지션을 산출하는 절차로 정의될 수 있다. 청산은 다수의 채권 및 채무를 차감 및 정산하여 차액만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결제 횟수 및 금융회사가 결제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금의 규모를 대폭 감소시켜 결제 효율성 향상 및 유동성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금융회사 간 최종적인 채권 및 채무관계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청산의 방식은 청산 대상기관의 수에 따라 다자간 청산(multilateral clearing)과 양자간 청산(bilateral clearing)으로, 청산기관이 청산 대상거래의 중간에서 당사자로 개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리인 청산(agency clearing)과 CCP 청산(central counterparty clearing)으로 구분된다. 대리인 청산에서 청산기관은 지급지시 정보를 중계하고 결제금액을 산출할 뿐 거래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는 반면 CCP 청산에서의 청산기관은 스스로 거래의 당사자로서 금융회사 간 거래관계에 개입함으로써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게 된다.

청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된 리스크로는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참가기관의 신용한도 설정, 사전 담보제, 손실 공동 분담제, 차액결제 참가자격 제한, 중앙은행의 일중 유동성 공급, 차액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등이 있다.

나아가 국내 및 해외의 청산업무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본에서는 CCP 청산 방식으로,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에서는 대리인 청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적 규율 현황’에서는 국내·외에서 지급결제 청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국내에서는 청산업무의 전반에 관하여는 법률이 아닌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금융결제원의 업무별 규약에서 주로 정하고 있다. 2020년 11월 27일과 2021년 11월 4일에 각각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청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특칙을 두어 청산을 포함한 지급결제의 전 과정이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금융회사의 회생 또는 파산의 상황에서 무효화되지 않도록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은행법에서는 청산기관을 포함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해외의 입법례로는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영국에서 청산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규정내용은 청산, 청산기관 및 청산시스템에 대한 정의, 청산기관의 의무, 청산업무의 운영, 청산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결제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규정항목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결제에서 청산 및 결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파급효과 및 그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제4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적 성격’에서는 지급결제 청산의 민법상 상계 해당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민법상 상계의 요건은 채권의 동종성, 채권의 상호대립성, 채권의 이행기 도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성질의 채권이 아닐 것으로 정리된다. 이 중 채권의 상호대립성 요건 충족 여부가 주로 문제 되는데 다자간 대리인 청산에서는 각 거래별 양 당사자 간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당사자 간 상계의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민법상 채권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결여되어 민법상 상계에 해당할 수 없다. 양자간 청산과 다자간 CCP 청산의 경우 채권의 상호대립성이 인정되며 장래의 시점인 결제일에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므로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상계하도록 하는 민법상 상계의 예약에 해당한다.

‘제5장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에서는 지급결제 청산을 법제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아보고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법제화 필요성은 지급결제에서 청산의 금융법적 의의의 측면, 청산의 독립적 기능의 측면, 지급결제의 결제완결성 보장의 측면에서 도출된다. 지급결제에서 청산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하나 청산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결제리스크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수반하기 때문에 청산에 관하여 법제화하는 것은 금융법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지급결제에서 청산은 금융회사 간 채권 및 채무관계를 확정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법제화를 통해 청산의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청산업무의 전문적, 안정적 수행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이유는 결제완결성 보장의 측면에서 도출된다. 다자간 대리인 청산의 경우 민법상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특칙에서는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특칙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상계에 관한 조항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되어 상계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다자간 대리인 청산의 구조 자체가 무효화되고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게 되는 법적 위험이 존재하므로 청산에 관한 법제화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급결제에서 청산에 관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청산에 독립적 기능을 부여하고 청산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민법상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결제완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부분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지급결제에서의 청산도 자본시장에서의 청산

과 마찬가지로 대리인 방식이 아닌 CCP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모든 청산 대상 거래를 상호화함으로써 민법상 상계의 채권의 상호대립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산 구조의 유효성을 보장하고 법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급결제에서 청산은 지급결제의 전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 청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청산에 참가하는 금융회사 일방의 결제 불이행이 다른 금융회사 및 전체 금융시스템에 연쇄적으로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결제리스크 관리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청산의 법적 유효성 및 청산을 포함한 지급결제 전과정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산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산업무에 대한 허가제 도입이나 청산기관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의 소재에 관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았다. 그에 대해서는 현재 유관 기관 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논의의 진행에 따라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단행본]

-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업무 해설」, 2013.11.
_____, 「지급결제 A to Z」, 2021.12.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박영사, 2023.9.10.
김용덕, 「주식민법 채권총칙」,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10.
양창수/권영준,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5
양창수/김재형, 「계약법」, 박영사, 2015.5.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한국거래소, 「KRX 청산결제의 이해」, 2021.12.
한국은행, 「2022 지급결제보고서」, 2023.4.
_____,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2014

[논문]

- 김기환, “상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노철우, “행정입법의 일환으로서 한국은행 규정의 의의, 성격 및 효력”, 금융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0
박용우, “지급결제제도의 결제완결성”, 금융법연구 제3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06
박종미, “제3자의 상계권 행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6.8
이지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규율 체계와 그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6.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체계와 최근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토”, 상사법연구 제39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20, 313면

정순섭, “디지털 금융혁신관련 법령분석과 향후 입법·정책과제,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0.9.30.

_____, “비현금지급수단의 발전과 지급결제법제”, BFL 제9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0.1.

[자료]

국회사무처, 정무위원회회의록, 제384회 국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1.2.25.

이용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84회 국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1.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855, 발의연월일 2020.11.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137, 발의연월일 : 2021.11.4,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한국은행,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지급결제조사자료 제2020-3호, 2020.9.

_____, “통합도산법(안)상의 결제완결성 보장 필요성”, 2004.12.

_____, “통합도산법 제정으로 결제완결성 법적으로 보장”, 2005.3.3.

_____,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지급결제조사자료 제2020-3호, 2020.9.

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 “거래소·예탁결제원 청산·결제 기능 및 소유구조 개편 합의”, 2006.8.31.

현정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지급결제조사자료 2008-1, 한국은행, 2008.2.

대법원 2007. 11. 13. 선고 2007다1753 판결

국회 의안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 해외 문헌

[단행본]

Armour, John *et al.*, *Principles of financial regulation*, Oxford, 2016

高橋康文ほか『逐条解説 資金決済法』（金融財政事情研究会, 増補版, 2010年）

中島真志=宿輪純一『決済システム のすべて』（東洋経済新報社, 第3版, 2022年）

[논문]

Bridge, Michael, “Clearing houses and insolvency”, *Law and Financial Markets Review*, Volume 2 - Issue 5, Routledge

Effors, Robert C., “Current legal issues affecting central banks”, *Volume IV*, IMF, 3 April 1997

[자료]

Australian Payments Network, “2022 Annual Review”, 2022,

Bank of England, “Bank of England’s RTGS and CHAPS services: Service Description”, February 2018

Bacs Payment Schemes Limited *et al.*, “An Introduction to the UK’s Interbank Payment Schemes”, 2016

BIS, “A Glossary of terms used in payments and settlement systems”, March 2003

___, “clearing and settlement arrangements for retail payments in selected countries”, September 2000

___,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April 2012

CPSS,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Japan”, CPSS-Redbook-2012. 2012

____,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 CPSS-Redbook-2012, 2012

British Eagle International Airlines Ltd. v Compagnie Nationale Air France [1975] 1 WLR 758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v Ansett Australia Holdings Ltd. [2008] HCA 3

BPAY 홈페이지 <<https://www.bpay.com.au>>

Federal Reserve Bank 홈페이지 <<https://www.frb services.org>>

NPP Australia 홈페이지 <<https://nppa.com.au>>

Payments Canada 홈페이지 <<https://www.payments.ca>>

TCH 홈페이지 <<https://www.theclearinghouse.org>>

Zengin-net 홈페이지 <<https://www.zengin-net.jp>>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Legalization of Payment Clearing

Hyo Ok Hong

Law on Financial Regul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legalization of payment clearing.

At first, the concept and function of payment clearing was studied. Payment clearing can be defined as a procedure for transmitting, reconciling and confirming payment order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establishing final positions for settlement by netting of payment instructions. Payment clearing significantly reduces the number of settlement and the amount of fund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must hold for settlement by netting, thereby improving efficiency of payment system. It also confirms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Types of payment clearing are divided into multilateral clearing and bilateral clearing depending on the number of institutions subject to payment clearing, and agency clearing and CCP clearing depending on whether the payment clearing institution intervenes as a party in the

middle of the transaction. In agent clearing, the clearing house just transmits payment order and establishes final positions for settlement by netting but does not become a party to the transac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while in CCP clearing, the clearing house guarantees the implementation of settlement by becoming a party to the transaction.

Next, legislation on payment clearing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was studied. In Korea, the regulation of the Bank of Korea and the agreement between the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rings institute and financial institutions mainly deal with payment clearing. The amendment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which was respectively proposed on November 27, 2020 and November 4, 2021 and i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cludes legalizing of clearing for electronic payment transactions.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as special rules on the payment system to ensure settlement finality so that the entire process of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is not invalidated in the situation of rehabilitation or bankruptcy of financial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the payment system. The Bank of Korea Act stipulates the Bank of Korea's authority over payment system operators, including clearing house. Overseas, legislation on payment clearing can be found in Japan, Australia, Canad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 contents of legislation vary among countries and can be divided into definitions of payment clearing, clearing house and clearing systems, obligations of clearing house, monitoring and supervising of clearing system, and risk management.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payment clearing, whether payment clearing can be regarded as set-off under the Civil Act was reviewed. The requirements for set-off under the Civil Act include mutuality of

obligations. Obligations mean obligations between two parties, so in multilateral agency clearing, there cannot be mutuality of obligation. Therefore, the legal nature of multilateral agency clearing cannot be offset under the Civil Act. Contrarily, bilateral clearing and multilateral CCP clearing meet the requirement for mutuality and can be regarded as reservation for set-off since time for the performance arrives in the future at the settlement date.

Through this study, the necessity for legalization of payment clearing was derived from the importance of payment clearing in the field of financial regulation, the independent function of payment clearing, and the guarantee of settlement finality. Payment clearing greatly contributes to the efficiency of the payment system and at the same time, due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payment clearing based on multilateral netting, there are always concerns about failure for settlement. Therefore, legalization of payment clearing means that the efficiency and the safety of the payment system is systematically guaranteed under the law. Moreover, since payment clearing plays an independent role as confirming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by legalization of payment clearing, the legal role of payment clearing can be clarified and the stable performance of payment clearing can be ensured.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reason for the need for legalization of payment clearing is to guarantee settlement finality. Since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oes not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and multilateral agency clearing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set-off under the Civil Act, there is a legal risk that multilateral agency clearing may be invalidated and settlement finality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may not be guaranteed. Therefore, payment clearing should be legalized in a way to ensure settlement

finality regardless of provisions on set-off under the Civil Act.

Payment clearing plays a pivotal role in the entire process of payment system, and due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multilateral clearing, the failure of one financial institution participating in payment clearing can have a significant ripple effect o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entire financial system. Therefore, the management of risk should be treated with a high importance and from this point of view, payment clearing needs to be legalized to legally ensure the legal validity of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finality.

**keywords : payment system, clearing, agency clearing, CCP clearing,
netting, settlement finality,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tudent Number : 2022-24560